
「공적연금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1. 공적연금의 연금총당부채 인식범위 1

2. 연금총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9

3. 4대 공적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45

1

주제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 I. 서론
- II. 공적연금제도
- III.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 IV. 해외사례 분석
- V. 결론

목 차

I. 서론	4
II. 공적연금제도	5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5
2.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5
3. 공적연금 관련 법령 검토	6
4. 공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현황	8
III.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9
1. 교환거래의 개념	9
2.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	9
3.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검토	11
IV. 해외사례 분석	13
1. 미국	13
2.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14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14
4. 호주 및 뉴질랜드	15
5.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15
V. 결론	16

I. 서론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제도 하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을 넘어 국가부채 규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는 주제Ⅱ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검토할 것이다.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하 “공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위한 판단근거로 교환거래 개념을 사용한다. 교환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수취대가로 미래 금전, 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 및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에서 이 개념을 연금충당부채 인식을 위한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발생주의 도입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교환거래개념을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적연금에 대한 교환거래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이외에도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인식범위를 위한 판단근거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사항으로는 제2장 공적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며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의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제3장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교환거래의 개념 및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해보도록 한다. 제4장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도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해외사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판단에 활용하도록 한다.

II.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공적 연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기여금 또는 조세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연금제공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크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리 감독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써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에 책임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업무의 집행과 연금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3) 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복무된 연한에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운영주체는 국방부장관이며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군인연금과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도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학연금제도의 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며, 자격·징수·급여업무 및 기금운용 등의 집행업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3. 공적연금 관련 법령 검토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연금의 성격상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족액에 대해 보전하는 의무를 지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 계상의 판단근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국민연금법

-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 공무원연금법

-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3) 군인연금법

-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1〉 공적연금 관련 법조문 비교

구 분	관리주체	운영주체	대 상	근거법률	국가부담여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	18~60세 국민 및 거주외국인	국민연금법	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 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 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 정(調整)되어야 한다.(4조①) 법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 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 공단	각 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법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급여에 소용되는 비용을 기 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69조①, 69조②)
군인연금	국방부	국방부	복무군인	군인연금법	법 제39조 (보전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에서 부담한다.(39조②)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교육과학 기술부	사학연금 공단	각 법에 규정된 학교기관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법 제53조 (국가의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53조의⑦)

공적연금 및 관련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해주는 의무는 없다. 다만 5년마다 재정수지를 재계산하여 국민연금 재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재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임의규정을 두어 보전의무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 군인 및 사학연금은 강제규정 혹은 임의규정으로 국가가 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4. 공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현황

공적연금은 국가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 각각의 산출근거에 따라 자본성격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각각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재정운영표에 연금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연금비용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경우 기존에 계상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 일괄적으로 계상되므로 최초 도입 시 회계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1. 교환거래의 개념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여부 판단근거가 되는 주요 개념이 바로 교환거래·비교환거래 개념이다. 교환거래란 재화 및 용역의 수취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비교환거래란 일방적인 자원 흐름이나 약속이 있는 거래로서 납입자와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환거래의 개념이 성립할 때 부채의 인식은 부채의 인식기준을 만족할 때, 즉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미래 자원유출이 확실할 때 이루어진다. 반면 비교환거래의 경우 부채의 인식은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미지급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교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정책의 문제이거나 변동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SFFA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등 각국의 해외사례에서도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판단에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 개념을 사용하여 인식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제4장 해외사례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환거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다만 교환거래의 개념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부채의 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환거래의 개념을 만족한다고 판단한다.

(1) 현재의 의무

부채의 정의는 국가회계실체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지급원인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국가회계실체는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국가회계실체가 기금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약정된 급여를 보장한다면 기금의 운용성과가 나쁠 경우 당초 기여금 외에 향후 추가적 현금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 가능성'이 충족된다.

(3) 신뢰성 있는 측정

부채의 인식은 미래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사용한다. 보험수리적 평가 방식이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연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며, 대상자를 집단으로 묶어 가정을 적용한다면 신뢰성 있는 가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주제Ⅱ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검토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에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국민연금의 관리실체로서 연금가입자의 기여금 등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비교환거래 성격),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권자의 확정 연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격이 연금 지급 재원 부족 등에 대해 국가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국가회계실체의 연금 급여 지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연금재정의 균형을 위해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이 타 연금에 비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연금지급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로서 피고용자인 공무원 또는 군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의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교환거래의 개념)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조건(공무원연금: 20년 이상 가입 및 65세 이상, 군인연금: 2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이 지급되므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¹⁾

사학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연금의 관리실체이며 교직원의 직접적인 고용주체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학교법인에 존재한다. 다만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연금의 업무를 국가회계실체인 기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과 국가회계실체간의 교환거래가 명확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가 아니나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사학연금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3.1〉 공적연금 부채 인식요건 검토

판단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현재의 의무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경제적 효익 유출의 높은 발생가능성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신뢰성 있는 측정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	X	○	○	X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급여체계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고, 법률적으로 국가가 사학연금기금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제도의 실질이 공무원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IV.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서(SFFAS)에서는 연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교환거래,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은 비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상이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
- 교환거래는 거래의 일방이 가치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가치를 받는 거래로서, 발생된 급여를 미래에 지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측정 가능할 때 부채로 인식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교환거래로 보아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 포함되며,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인식

(2)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

-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비교환거래로 분류되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연금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즉, 부채의 인식은 교환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자원의 미래유출이 확실할 때 이루어지지만 비교환거래의 경우 지급기일이 도래(due)하고 미지급(payable)했을 때 이루어짐.
- 다만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비교환거래로 보아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험과 관련한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해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의 주장:
 - (i) 해당 거래가 교환, 비교환, 또는 준교환적 거래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정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current liability)”가 존재한다면 부채와 관련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 (ii) 재정조달방식의 경우 부과방식 또는 적립방식과는 관계없이, 연금제도가 가입자의 기여금이 클수록 급여수령액도 크도록 설계되므로 준교환거래적 성격(quasi-exchange features)을 갖기 때문에, 기여금의 수령과 급여의 지급을 비교환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2.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 2001년 9월에 개최된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에서 공무원연금은 계약에 의한 의무(contractual obligation)이므로 부채로 인식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
- 사회보험사업(Social Insurance Programs)의 부채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함
-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근거는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이 정부의 재무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사회보험사업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근거는 사회보험사업(Social Insurance Programs)이 계약적 교환거래(contractual exchange transactions)가 아니라는 이유임
- 또한, 정부가 미래 수령금의 수준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해당자들은 법원에 손실된 부분만큼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사회보험사업은 준조세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납세금액과 비례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음
-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국은 사회보험사업에 대해서 정부 재정상태표에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

3.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 정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환거래로 보아 IPSAS 25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
-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benefits)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IPSAS ED 34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에 따라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과 장기재정추계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4. 호주 및 뉴질랜드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나 국민연금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뉴질랜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미이행계약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한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이러한 의무는 그 혜택 제공을 위한 본질적 재원이 미래 과세 등에서 충당될 것이고, 수급권자가 그 혜택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호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수급조건이 충족에 따른 지급 확정액만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

5.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사회보장제도

- IMF 정부재정통계편람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때에 가서야 이를 비용으로 기록
- 국민들은 퇴직급여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이를 부기사항(memorandum item)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V. 결론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되는 연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와 교환거래의 개념과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교환거래 성격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인 국가가 퇴직 후 보상할 연금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며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금재원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산출하므로 추정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 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제도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대가성이 있는 교환거래로 보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연금재원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OECD 가입국들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가 없다. 또한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장래 연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곤란하므로 국가회계기준 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사학 연금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고용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연금의 운영 및 관리는 국가회계 실체인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는 다르게 고용주체와 기금의 관리주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회계실체는 사학 연금의 관리실체로서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연금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가 법률 상 임의규정으로 존재하므로 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현재의 의무 및 높은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인식 금액을 계산할 경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적용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채의 인식요건과 교환거래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해외

국가들과의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교환거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국가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학연금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연금제도이다. 사학연금은 교환거래의 개념은 충족하지 않지만 부채의 인식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이 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운영의 계속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식공시사항 및 필수보충정보 제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제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 I. 서론
- II. 퇴직연금제도
- III. 연금채무의 개념
- IV.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 V. 해외사례 분석
- VI. 결론

2 주제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 연금채무 및 연금비용 산정방식 -

I 목 차 I

I. 서 론	22
II. 퇴직연금제도	24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24
2. 퇴직연금제도의 분류	24
(1)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24
(2)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25
3.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25
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26
III. 연금채무의 개념	29
1. 연금채무의 개념	29
2.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	30
IV.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32
1. 연금채무 및 표준보험료	32
2.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33
3. 계산사례	36
4.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의 비교	38
V. 해외사례 분석	39
1. 각국의 연금제도 및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39
VI. 결 론	41

I. 서론

국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 산출을 목적으로 '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도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제도 하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범위 및 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서 연금충당부채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현재 부칙에서 이를 유예한 상태이다.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이며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에 포함되는 연금은 주제 I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범위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법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 회계기준상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분류되는데,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공적연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어떤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채무를 계상해야 할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계산대상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기 도입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국가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에 가장 적절한 연금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연금채무를 계산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 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평가방식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미국공무원연금에서 사용하는 가입연령정상 비용방식과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이 대표적이다. 두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2장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상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3장 연금채무의 개념에서는 연금채무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회계기준상 가장 적절한 연금채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4장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는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하며 제5장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 도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국제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과거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퇴직이후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주는 미래의 퇴직급여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당해 기금은 별도의 실체로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제도자산을 투자·관리함으로써 퇴직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의 기여금납부여부에 따라 분담형과 비분담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담형제도의 경우 종업원은 약정에 따라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하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퇴직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비분담형제도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기여금의 전부를 책임지게 된다.

2. 퇴직연금제도의 분류

(1)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일정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된 기여금을 기금에 납부하게 된다. 산정식에는 종업원의 연령, 근무기간, 고용주의 순이익 및 임금수준 등이 고려된다. 중요한 것은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산정된 기여금에 대한 납부책임만을 부담하며 종업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될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 종업원이 궁극적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는 기여금납부액 및 기금의 누적이익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금납부액은 독립된 제삼의 실체인 기금관리자에게 인계되는데 기금관리자는 수익자, 즉 제도가입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관리자는 제도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투자와 급여지급의 책무를 가지며 기금은 고용주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실체이다.

(2)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확정기여제도와 상반되게 종업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게 될 급여가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퇴직 전 최종임금의 함수로써 정의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기여금납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기금적립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금적립방식이 채택되든지 간에 해당 기금은 당초 정의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기금의 수익자가 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고용주가 기금의 수익자가 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금의 주된 목적은 제도자산을 투자·관리함으로써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확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형식적으로 기금은 별개의 실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금 자산과 기금부채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즉, 확정급여제도가 유효하다면 기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는 당초 정의된 확정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고용주가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기금에 잉여자산이 있다면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기금환수를 통해 고용주가 이를 되찾을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주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계상 여부이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고용주가 외부의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그 기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확정급여액에 대한 법적·의제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고용주의 재정상태표상 부채가 계상된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 분	확정기여제도(DC형)	확정급여제도(DB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가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
기금의 운용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기금에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기금 또는 내부 기금 운용 가능
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 관련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주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가 약정한 급여를 전직 또는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기금 자산이 부족 시 고용주가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연금급여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가나 보험 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가나 보험 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및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의 추가 부담분
보험수리적 위험 및 투자위험의 부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이 부담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 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 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가 부담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 보다 저조하다면 고용주의 의무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국가회계실체의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분류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기금의 운용주체, ②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③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 부담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연금충당부채 계상 대상범위인 공적연금의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1) 기금의 운용주체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와 분리된 독립 외부 실체이다.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제도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내부 기금에서 운용되므로 기금운용주체 측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자원 부족 시 보전의무

연금충당부채의 계상 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연금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한 보전의무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회계실체는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자원 부족 시 보전의무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3)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 부담주체

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인 보험수리적 위험과 기여금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는 국가회계실체이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DB형)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로 판단해본 결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연금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재정상태표일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급여에 대해 의무를 지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채무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지급원인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연금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확정급여제도 상 확정급여액은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고용주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하여 약정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므로 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연금채무의 측정은 보험수리적 평가가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므로 부채의 인식요건 중 '측정의 신뢰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그 수급대상과 연금액 추정 시 고려하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연금채무의 개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금채무의 개념

1. 연금채무의 개념

연금채무의 개념은 계산대상범위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수급권자에 대해서 인지, 연금제도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금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급여수준이 현재 급여수준인지 미래 급여상승효과를 예측하여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연금채무의 크기가 달라진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장급여채무(VBO : Vested Benefits Obligation)

-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연금가입자에 대한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다른 대안보다 가정이 적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 단점: 연금제도 종료의 가정이 고용주의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현재 시점의 채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님

누적급여채무(ABO :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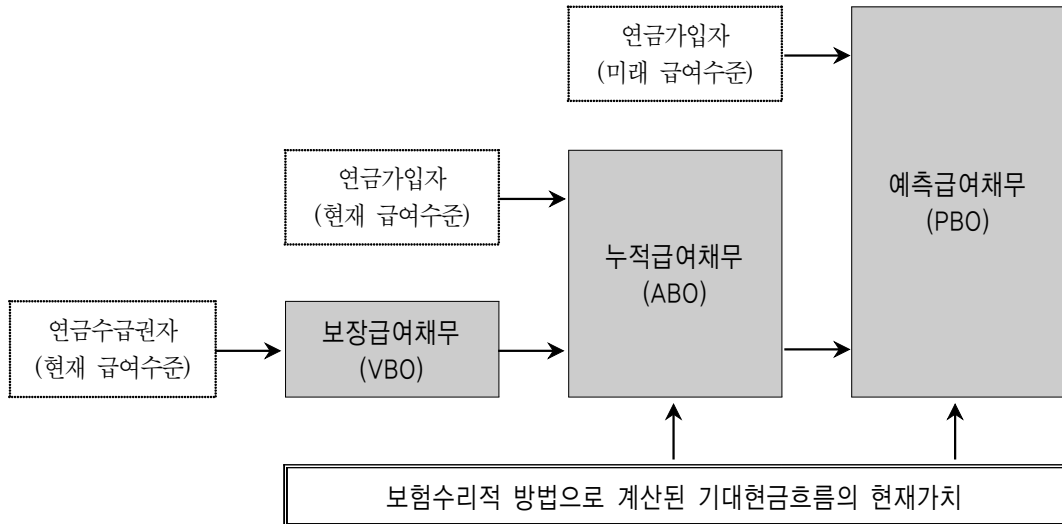
-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현재의 소득수준을 기초로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연금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부채로 타당할 수 있음
- 단점: 현재 급여수준을 이용하여 계산된 퇴직시점의 급여의 현재가치를 채무로 계상함으로써 인한 측정상의 왜곡이 발생함

예측급여채무(PBO :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급여 상승예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정부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최종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목표액을 채무액의 개념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며 미래의 자원유출예상액에 미래의 급여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
- 단점: 미래의 급여수준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표 3.1〉 연금채무의 개념비교



2.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해서는 연금채무의 개념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연금채무의 개념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계산 적용대상과 적용임금수준이 달라지므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역시 달라진다.

연금채무의 개념 선택은 발생주의 도입에 따른 것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특성과 국가회계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계속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중료를 가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연금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임금 수준은 부채의 정의를 고려하여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예상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측급여채무의 경우 계속성에 대한 가정이 국가회계실체에 부합하며, 미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하므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라는 부채의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채무금액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보장급여채무(VBO)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채무의 개념이 확정되면 이를 산출하기 위해 미래 연금지급액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 및 할인이 중요하다. 미래 연금지급액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 및 할인하는 과정이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IV.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 연금채무 및 표준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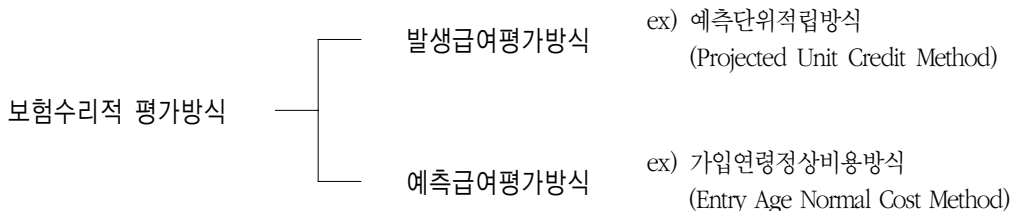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며 확정급여제도 하에서는 연금채무가 발생한다. 연금채무는 세 가지 개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연금채무의 개념을 채택하고 나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연금수급권자 및 연금가입자에 대한 과거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 후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금액이며 표준보험료란 연금채무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중 평가연도에 배정된 금액을 말한다. 기말 연금채무는 기초연금채무에 당기 연금비용을 더하고 당기 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연금채무의 변동원인인 연금비용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 이차비용,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구성되며 표준보험료는 연금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금비용 중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4.1〉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발생급여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과 예측급여평가방식인 가입 연령정상비용방식 두 가지이다. 대부분의 해외사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2.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은 연금채무의 개념을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고 예측급여를 근무연수로 나눈 방법으로 연금채무를 산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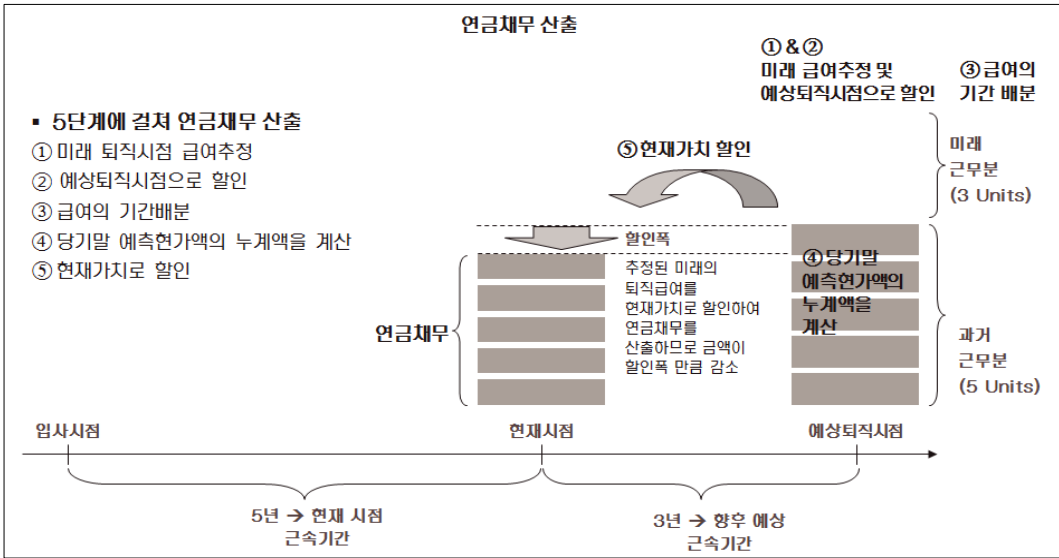
① 종업원의 현재까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급여총액을 추정하고, ②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예측급여총액의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 ③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재가액을 전체근무기간의 각 연도에 배분하고, ④ 당기 말까지의 기간에 배분된 예측급여현재가액의 누계액을 계산하며, ⑤ ④의 누계액을 당기 말 기준의 현재가치로 재환산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급여/근무연수방식)은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연금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계산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금채무가 산출되고 연금채무의 당기 현재가치 변동액이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가 되는 방법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일정 적립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으로 적립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의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더 우월한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 지급할 연금채무의 대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로 인식하게 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용역제공과 연금의 지급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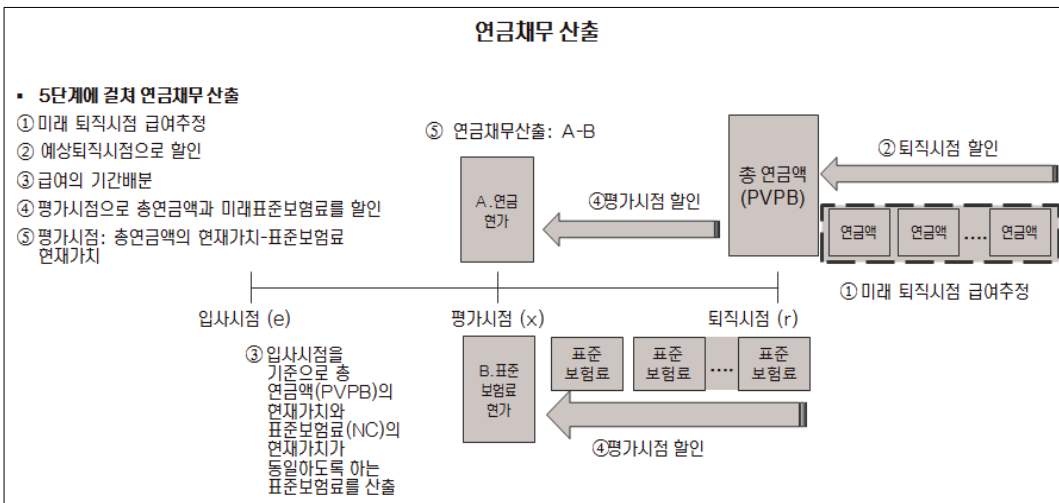
〈표 4.2〉 예측단위적립방식



(2)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예측급여평가방식은 종업원의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무기간에 걸쳐 각 근무기간의 근무원가가 균등하게 보수(임금)에 대한 근무원가의 비율이 일정하게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 기간의 근무원가가 평준화된다. 예측급여평가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이다.

〈표 4.3〉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연금채무를 산출과정에서 표준보험료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연금채무의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는 이러한 점이 차이가 발생한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에서는 연금채무는 총 연금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에서 미래표준보험료 누계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보험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담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비교해보면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산출방법의 기본이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¹⁾에 기초를 둔 방법으로 보험계리적 관점에서 더 우월한 방법이다. 또한 각 기간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초기에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1) 수지상등의 원칙은 적립방식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퇴직연금제도내의 총지출(퇴직급여 지급액 및 제도 운영비용)이 총수입(부담금 및 투자수익)과 같아져야 한다는 부담금 산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3. 계산사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실제 간단한 계산사례를 들어 연금채무와 연금비용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산정을 위한 가정

- 근로제공기간 : 5년 (20X1년 ~ 20X5년)
- 연금은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계산
- 연간임금은 5000만원이며 향후 매년 10%복리로 상승을 가정
- 연간 할인율 : 5%
- 퇴직전최종임금(추정액) : 73,205,000원
- 연금산정방식: 퇴직전최종임금*근속연수*1%
-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
- 연금개시일 기준 총연금지급 추정액의 현재가치 : 28,263,499원²⁾

□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단위: 천원
	20×1	20×2	20×3	20×4	20×5
기말연금충당부채 1)	4,651	9,767	15,382	21,535	28,264
기초연금충당부채	-	4,651	9,767	15,382	21,535
연금비용					
이자비용	-	233	488	769	1,077
당기근무원가	4,651	4,883	5,127	5,384	5,652

1) 매회계연도말 기말연금충당부채 산정

-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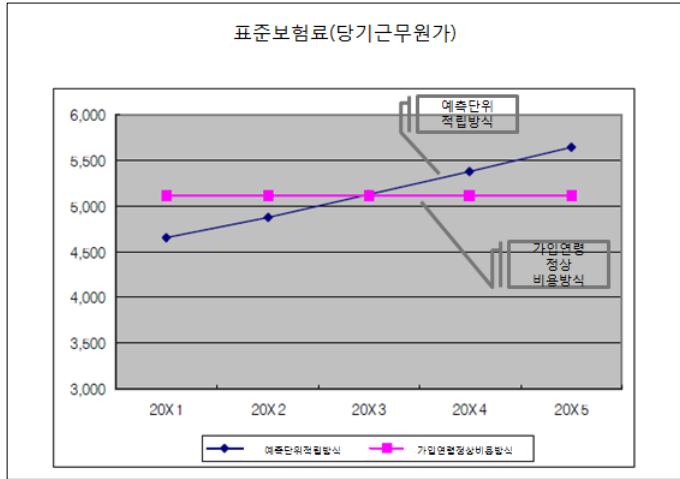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					단위: 천원
	20×1	20×2	20×3	20×4	20×5
기초연금충당부채	-	5,115	10,486	16,125	22,046
이자비용	-	256	524	806	1,103
당기근무원가 1)	5,115	5,115	5,115	5,115	5,115
기말연금충당부채	5,115	10,486	16,125	22,046	28,264

- 1) $L(\text{근무원가}) \times 5.52563^{(*)} = 28,263,499$ $(*)$ 연금의종가요소 (5년, 5%)
 $\therefore L = 5,114,982$

□ 예측단위적립방식 vs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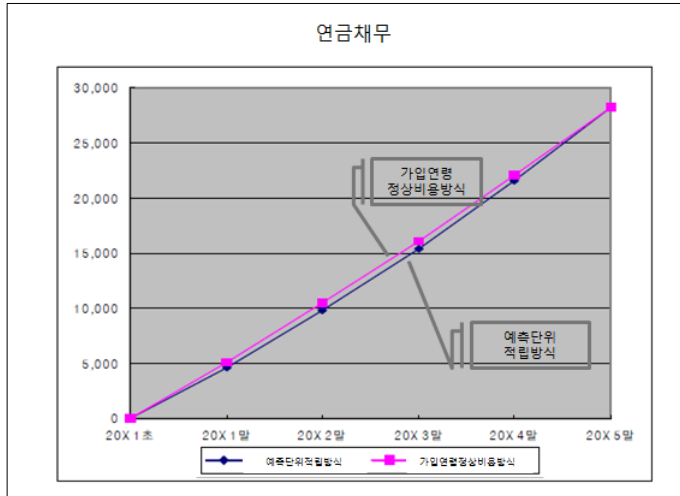
1) 표준보험료(당기 근무원가)의 비교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표준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의 경우 표준보험료가 매기간 동일함



2) 연금채무의 비교

종업원의 근무기간 초반에는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보다 많은 당기근무원가를 인식하므로 그 결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이 연금채무가 더 높게 인식됨



2) $73,205,000 \times 1\% \times 5\text{년} \times 7.72174(*) = 28,263,499$

(*) 연금의현재가계수 (10년, 5%)

4.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의 비교

□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 일정 적립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
- 근로자 수급권보장에 초점
- 미래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더 부합
-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퇴직급여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 채택국가 : 미국회계기준(US-GAAP),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호주정부회계기준, 뉴질랜드정부회계기준, 영국 공무원연금회계기준

□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 일정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
- 안정적 부담금에 초점
- 연금제도내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충실한 방법
-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초기에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인식
- 채택국가 :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공무원연금)

V. 해외사례 분석

1. 각국의 연금제도 및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주요국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의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 계상여부를 검토하고, 각 국가들이 채택한 연금채무의 개념과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검토하여 국가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시사점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표 5.1〉 주요국 연금충당부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부채인식여부	인식	연금실체가 인식(*)	인식	인식	인식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관련 기준서	(SFAS No.5)	(IAS26(FReM)) IFRS 도입	(AASB119) IFRS 도입	(NZ IFRS19) IFRS 도입	(PS 3250) IFRS 도입
연금채무개념	PBO(ABO)	PBO	PBO	PBO	PBO

(*) 고용실체는 IAS19의 DC plan과 같이 회계처리(Fianancial Reporting Manual, FReM)

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적립부채가 누적급여채무(ABO)보다 작을 경우 최소한 누적급여채무까지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연금실체가 인식하고 있고 고용실체는 국제회계기준서 제19호 종업원급여 (IAS 19³⁾)에 따라 확정기여제도(DC)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연금실체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충당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다.

3) IAS 19 Employee Benefits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에 대한 총당부채를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총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크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들과 미국사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상 종업원급여 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UCM)과 예측급여채무(PBO)의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에서는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과 예측급여채무(PBO)(최소 ABO개념)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VI. 결 론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계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연금채무의 개념 및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재무제표에 신뢰성 있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별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DB)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민간의 퇴직연금제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민간의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개념 또한 이러한 민간의 제도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B)와 확정기여제도(DC)로 구분된다. 이 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금의 운영주체 및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의 귀속주체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와 별개인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발생하는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은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로 포괄된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계상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그 기금의 운영 실체가 외부의 별개 기금이 아닌 국가회계실체 자체이며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의 부담주체가 고용주인 국가이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의 보전의무가 있으므로 확정급여제도로 판단된다.

2. 연금채무의 개념 채택: 예측급여채무(PBO)

확정급여제도인 경우 고용주는 연금채무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게 된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그 계산대상 범위 및 적용임금수준에 따라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연금채무는 일반적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채의 정의를 기준으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채무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 이행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장급여채무(VBO)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연금채무를 인식하게 된다. 고용주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법률적·의제적 의무가 존재하므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연금채무를 인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에 대한 연금채무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의무가 존재하지만 부채가 미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함

연금채무 계산 시 누적급여채무(ABO)를 적용한다면 그 가정상 미래 급여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지급액을 연금채무로 예측하게 된다. 연금채무는 종업원의 근로제공이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의 금액이지만 그 지급은 미래에 이루어지므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미래 지급될 예상액을 부채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6.1〉 연금채무의 개념

계산대상 및 급여상승효과 반영여부	보장급여채무	누적급여채무	예측급여채무
가. 퇴직 연금수급권자	VBO	ABO	PBO
나. 가입근로자			
- 연금수급권 취득자			
- 연금수급권 미취득자			
다. 미래 급여상승 반영을 연금지급액 예측시 반영			

VBO, ABO 모두 평가일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
PBO 는 미래 급여상승효과가 반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은 부채의 정의에 따라 검토한 결과 발생주의에 더 부합하는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 초기 도입을 감안하여 채무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보장급여채무(VBO) 개념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실무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의 검토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4장에서 예측단위적립방식(PUCM)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을 검토하였다. 두 방법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주요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그 적용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아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검토하도록 한다.

(1) 국제적 회계 정합성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기도입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해외사례분석에서 주요국들의 연금충당부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정부부문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도입국들과의 비교가능성 및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발생주의 회계원칙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하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효익(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가액을 전체근무기간에 걸쳐 각 근무기간의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도록 배분하므로 퇴직급여와 종업원의 근무용역제공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예측단위적립방식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측정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해 산정된 연금채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과거사건)에 대해 제도규약 상 약속된 급여(현재의무)에 근거하여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회사의 연금채무(미래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퇴직급여총액을 단순히 전체근무기간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도록 배분한 방법이므로 당해 기간에 발생하는 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4. 결론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의 범위에 포함된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계상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 계상 대상인 연금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적합한 연금채무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적합한 연금채무의 개념은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대상은 국가회계실체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은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급여상승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므로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대표적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의 개념, 사례 및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국제적 회계 정합성, 발생주의 회계원칙, 부채의 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각 방법을 검토한 결과 보다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고,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부채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판단하였다.

3

주제

4대 공적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I. 서론

II. 종업원연금 공시 해외사례

III. 사회 연금 공시 해외사례

IV. 결론: 4대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부록〉 2010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3
주제

4대 공적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목 차

I. 서론	48
II. 종업원연금 공시 해외사례	50
1. 미국	50
2. 호주, 뉴질랜드, IPSAS	54
3. 시사점	65
III. 사회연금 공시 해외사례	67
1. 미국	67
2. 호주, 뉴질랜드	72
3. IPSAS	75
4. 시사점	81
IV. 결론: 4대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83
1. 종업원연금	83
2. 사회연금	84
〈부록〉 2010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86

I. 서론

국가회계기준 제55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에 관하여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연금(이하 같다)의 구체적 주식 공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제54조에서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인 필수보충정보 중 하나로서 연금보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대연금에 대한 연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4대연금의 주식 공시사항 및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은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재무제표는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의 국가 재무제표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시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 초기라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4대연금의 회계처리는 보험수리적 계산과 같은 복잡한 기술이 개입되므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보의 유용성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시할 사항을 판별하여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 정도를 판단할 때에도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대연금의 공시범위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 비교, 즉 해외 공시관련 규정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 공시사항과 그렇지 않은 공시사항을 분별하고 국가 재무제표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4대연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측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공시범위는 관련성이 있지만 그 주제는 이미 발표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시 관련 규정 및 실제 공시사항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 관련 규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4대연금은 종업원연금¹⁾과 사회연금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재무제표 표시 및 측정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므로 공시사례 조사 및 그에 관한 시사점을 종업원연금과 사회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무제표에 어떤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가의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급여이므로 국가회계실체의 종업원 연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종업원연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II. 종업원연금 공시 해외사례

1. 미국

(1) 재무제표 공시 관련 규정

연방공무원(civilian)을 가입자로 하는 종업원연금제도는 1983.12.31 이전 임용자가 가입한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CSRS)과 1984.1.1 이후 임용자가 가입한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FERS)의 두 가지 제도로 대별되며, 양자 모두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군인(military)을 가입자로 하는 Military Retir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Coast Guard, Foreign Service 등의 종업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FFAS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라 종업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된 가정(문단67)
- 정상원가(이하 문단 72)
- 회계연도 중 연금부채에 대한 이자
- 회계연도 중 연금제도 변경(또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과거(직전) 서비스 원가
- 회계연도 중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

(2) 재무제표 공시 사례

미국 연방정부의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주석15에서 종업원연금제도에 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주석에서 공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²⁾.

2) 미국 연방정부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15에는 종업원연금 외에도 퇴직후 헬스케어 및 생명보험에 관련된 공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① 회계연도말 현재 총당부채

(In billions of dollars)	Civilian		Military		Total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Pension and accrued benefits	1,632.9	1,529.4	1,262.7	1,177.1	2,895.6	2,706.5
Post-retirement health and accrued benefits	355.5	352.2	904.7	825.8	1,260.2	1,178.0
Veterans compensation and burial benefits	N/A	N/A	1,474.8	1,317.5	1,474.8	1,317.5
Life insurance and accrued benefits	44.0	39.7	11.7	12.1	55.7	51.8
FECA benefits	21.8	17.9	8.3	8.1	30.1	26.0
Liability for other benefits	0.4	0.3	3.5	3.6	3.9	3.9
Total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2,054.6	1,939.5	3,665.7	3,344.2	5,720.3	5,283.7

② 연금총당부채의 변동내용

(In billions of dollars)	Civilian	Military	Total
Actuarial accrued pension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09....	1,529.4	1,177.1	2,706.5
Pension Expense:			
Expected Normal costs	31.8	24.0	55.8
Interest on pension liability during the period.....	93.4	67.0	160.4
Prior (or past) service cost from the initiation of a new plan	0.1	-	0.1
Actuarial (gains)/losses (from experience).....	(39.8)	(21.6)	(61.4)
Actuarial (gains)/losses (from assumption changes)	90.5	66.6	157.1
Total pension expense.....	176.0	136.0	312.0
Less benefits paid.....	72.5	50.4	122.9
Actuarial accrued pension liability as of September 30, 2010 ...	1,632.9	1,262.7	2,895.6

2010 회계연도부터 SFAS 33이 적용되어 보험수리적 손익 중 가정의 변경에 따른 부분을 재정운영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이에 관한 주석에서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③ 주요 경제적 가정

Significant Long-Term Economic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Pension Liability and the Related Expense				
	Civilian		Military	
	2010	2009	2010	2009
Rate of interest.....	5.10%	6.25%	5.00%	5.75%
Rate of inflation.....	2.50%	3.50%	2.40%	3.00%
Projected salary increases.....	3.50%	4.25%	3.60%	3.75%

Significant Long-Term Economic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Post-Retirement Health Benefits and the Related Expense				
	Civilian		Military	
	2010	2009	2010	2009
Rate of interest.....	5.10%	6.25%	5.00%	5.75%
Ultimate medical trend rate.....	7.00%	8.00%	5.65%	6.25%

2010 회계연도부터 SFAS 33이 적용되어 수치가 대폭 변동되었다. SFAS 33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회계처리 지침에서 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할인율은 시장성 있는 국채의 이자율을 사용하되 기대 현금흐름과 만기가 유사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 기대 현금흐름의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 기간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과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보고일 현재 할인율은 시장성 있는 국채의 현재 또는 최근기간의 가중평균 이자율 보다는 역사적 평균 이자율을 반영해야 한다.
- 역사적 평균 이자율은 최소한 5개 기간의 이자율의 평균치를 사용해야 하며 5개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 역사적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기간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할인기간이 30년이 넘을 경우 해당하는 국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국채이자율을 보정 또는 추정하여 사용한다.

④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Civilian Employees

Pensions

OPM administers the largest civilian pension plan, which covers substantially all full-time, permanent civilian Federal employees. This plan includes two components of defined benefits. These are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CSRS) and the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FERS). The basic benefit components of the CSRS and the FERS are financed and operated through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CSRDF).

CSRDF monies are generated primarily from employees' contributions, agency contributions, payments from the General Fund, and interest on investments in Treasury securities. See Note 24—Earmarked Funds.

The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administers the Thrift Savings Plan (TSP) Fund. The TSP Fund investment options include two fixed income funds (the G and F Funds), three stock funds (the C, S, and I Funds) and five lifecycle funds (L 2040, L 2030, L 2020, L 2010, and L Income). The L-Funds diversify participant accounts among the G, F, C, S, and I Funds, using professionally determined investment mixes (allocations) that are tailored to different time horizons. Treasury securities held in the G-Fund are included in Federal debt securities held by the public and accrued interest in the Balance Sheets. The G-Fund held \$123.6 billion and \$113.3 billion in non-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as of September 30, 2010, and 2009, respectively.

Military Employees (Including Veterans)

Pensions

The DOD Military Retirement Fund (MRF) finances military retirement and survivor benefit programs. The increase in the Military Retirement Pension liability is due to additional benefit accruals (normal cost), interest on the pension liability, assumption and benefit changes, and actuarial experience. Liabilities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expected changes due to interest and benefit accruals, future benefit changes, assumption changes, and actuarial experience.

The Fund receives income from three sources: monthly normal cost payments from the Services to pay for the current year's service cost; annual payments from Treasury to amortize the unfunded liability and pay for the increase in the normal cost attributable to Concurrent Receipt per Public Law 108-136; and investment income.

The military retirement system consists of a funded, noncontributory, defined benefit plan. It applies to military personnel (Departments of Army, Navy, Air Force, and the Marine Corps). This system includes nondisability retirement pay, disability retirement pay, and survivor annuity programs. Military personnel who remain on active duty for 20 years or longer are eligible for retirement. There are three different retirement benefit formula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by the military: Final Pay, High-3 Year Average, and Career Status

Bonus/Military Retirement Reform Act of 1986 (REDUX). The date an individual enters the military determines which retirement system they would fall under and if they have the option to pick their retirement system.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benefits, see DOD's websites (<http://www.dfas.mil/army2/bonuses/redux.html>, and <http://www.defenselink.mil/militarypay/retirement/index.html>).

2. 호주, 뉴질랜드, IPSAS

(1) 회계기준상 특징 및 공시 요구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³⁾는 국가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종업원 연금의 공시에 관하여도 IFRS와 규정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IPSAS는 종업원연금에 대하여 IPSAS 25 “Employee Benefits”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IAS 19와 거의 유사하며, 공시사항 규정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및 IPSAS는 종업원 연금의 재무제표 공시에 관하여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IAS 19 문단 120A의 공시 요구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⁴⁾.

- (1) 기업의 보험수리적손익 인식에 관한 회계정책
- (2) 제도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설명
- (3)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된 내용
 - (가) 당기근무원가
 - (나) 이자원가
 - (다)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라) 보험수리적손익
 - (마) 급여지급액
 - (바) 과거근무원가
- (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문단 104A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된 내용
 - (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나) 보험수리적손익
 - (다) 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측정되는 제도와 관련된 환율변동효과
 - (라) 사용자의 기여금
 - (마)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바) 급여지급액
- (7) 다음 각 요소별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총비용과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
 - (가) 당기근무원가
 - (나) 이자원가
 - (마) 보험수리적손익
 - (바) 과거근무원가

3) 영국도 국가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통합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IAS 19 등의 공시 요구사항 중 국가회계실체의 종업원연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시하지 않았다.

- (8) 다음 각 요소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가) 보험수리적손익
- (9) 보험수리적손익을 문단 93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누계액
- (10) 지분상품, 채무상품,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등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로 각각의 공정가치 또는 전체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
 - (가) 기업이 발행한 각 유형별 금융상품
 - (나)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밖의 자산
- (12) 사외적립자산의 전반적인 기대수익률을 결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
- (13) 사외적립자산과 문단 104A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실제수익
- (14)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가) 할인율
 - (라) 미래임금상승률(그리고 제도의 공식적 조항이나 의제적 해석에 의해 미래 급여증가의 근거로 지정 되는 지수나 그 밖의 변수의 예상변동률)
- (16) 당 회계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의 금액
 - (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및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
 - (나)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에 관련하여 당초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조정할 경우 그 조정금액이나 조정비율
- (17) 보고기간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추정치

(2) 호주의 공시사례

호주는 IAS 19와 동등한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인 AAS 119에 따라 종업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인식하되,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호주의 2010 회계연도 국가 연결재무제표 주석 37에서 제공하는 종업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연금의 개요

Note 37: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Within the reporting entity, various Australian Government entities sponsor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Following are the plans that are covered in this note:

-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
- Public Sector Scheme (PSS);
- Parliamentary Contributory Superannuation Scheme (PCSS);
- Defence Force Retirement and Death Benefits Scheme (DFRDB);
- Military Superannuation Benefits Scheme (MSBS); and
- the following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schemes have been disclosed under the heading 'Other'. Information on the schemes can be foun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responsible entities.

Scheme title	Responsible entities
AvSuper	Airservices Australia
Australia Post Superannuation Scheme (APSS)	Australia Post Corporation
State Authorities Superannuation Scheme (SASS), State Superannuation Scheme (SSS), State Authorities Non-contributory Superannuation Scheme (SASCS)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
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 Superannuation Fund (ASCSF)	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
North American and London, Dublin and New Delhi pension schemes (NAPS and othe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serve Bank of Australia Officers' Superannuation Fund (OSF) and UK Pension Scheme (UKPS)	Reserve Bank of Australia
The Judges' Pension Scheme (JPS), Governor-General Pension Scheme and Federal Magistrates Death and Invalidity Scheme (these two are included in NAPS and other in the tables)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② 회계정책

(a) Accounting polici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lected to recognise actuarial gains or losses directly in other economic flows within the operating statement.

③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b) Plan descriptions

CSS and PSS

Members receive a lump sum or pension benefits on retirement, death, disablement or withdrawal. Members may also preserve their benefit in the form of a deferred pension. The CSS and PSS are closed to new members.

PCSS

Members who leave Federal Parliament (or their beneficiaries) are entitled to either a lump sum or pension benefit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ir parliamentary service (or, in the case of death, their marital status). For certain members, payment of their pension is deferred until age 55. The scheme is closed to new members.

DFRDB

The DFRDB is a closed defined benefit scheme. It provides a pension benefit, usually to those individuals with more than 20 years of service on exit. Part of the pension benefit can be commuted to a lump sum. The scheme is totally unfunded.

MSBS

The MSBS is a partly funded scheme. MSBS member contributions are paid into the MSBS Fund that is controlled by the MSBS Board and are therefore not reflected in the balance sheet. The Australian Government on behalf of the MSBS Fund makes funded benefit payments to members of the scheme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reimbursed by the MSBS Fund for these payments.

Other

These schemes are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s that provide benefits for employees on retirement, death, disablement or withdrawal. These funds generally provide defined benefits based on years of service and final average salary.

④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c) Reconciliation of the present value of the defined benefit obligation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m	\$m	\$m	\$m	\$m	\$m	\$m	\$m	\$m	\$m	\$m	\$m
Present value of defined benefit obligations at beginning of the year	(59,837)	(55,663)	(34,153)	(25,702)	(738)	(668)	(26,689)	(22,917)	(18,781)	(13,634)	(7,603)	(7,331)
Current service cost	(301)	(280)	(1,210)	(833)	(13)	(12)	(172)	(154)	(1,216)	(740)	(278)	(264)
Productivity contributions	(34)	(36)	(213)	(203)	-	-	-	-	-	-	-	-
Interest cost	(3,306)	(3,574)	(1,892)	(1,676)	(41)	(43)	(1,460)	(1,471)	(1,115)	(954)	(484)	(478)
Contributions by scheme participants	(98)	(102)	(539)	(536)	-	-	-	-	(232)	(206)	(78)	(81)
Actuarial gains/(losses)	(4,259)	(3,780)	(4,256)	(5,860)	(41)	(46)	(1,645)	(3,563)	(1,850)	(3,179)	(276)	175
Benefits paid ¹	3,384	3,593	687	627	30	32	1,407	1,416	272	257	733	376
Taxes, premiums and expenses paid	5	5	32	30	-	-	-	-	-	-	-	2
Transfers in	-	-	-	-	-	-	-	-	-	-	2	2
Net disposal cost	-	-	-	-	-	-	-	-	-	-	-	-
Past service cost	-	-	-	-	-	-	-	-	-	(325)	-	-
Curtailment gain	-	-	-	-	-	-	-	-	-	-	-	-
Exchange rate gains/(losses)	-	-	-	-	-	-	-	-	-	-	5	(5)
Experience adjustments on benefits	-	-	-	-	-	-	-	-	-	-	-	-
Effects of changes in benefit actuarial assumptions	-	-	-	-	-	-	-	-	-	-	-	-
Present value of defined benefit obligations at end of the year	(64,446)	(59,837)	(41,544)	(34,153)	(803)	(737)	(28,559)	(26,689)	(22,922)	(18,781)	(7,979)	(7,604)

¹ Benefits paid includes estimate of net benefits paid and productivity payments.

⑤ 연금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

(d) Reconciliation of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Fair value of scheme assets at beginning of the year	4,259	5,556	9,308	10,515	-	-	-	-	2,811	2,929	6,977	8,183
Expected return on scheme assets	280	368	659	745	-	-	-	-	209	215	561	636
Actuarial gains/(losses)	221	(1,048)	226	(2,273)	-	-	-	-	(124)	(612)	(185)	(1,645)
Employer contributions - appropriation from CRF	2,878	2,845	326	240	30	32	1,407	1,416	383	330	71	69
Employer contributions - productivity contribution	34	36	213	203	-	-	-	-	232	206	-	-
Contributions by scheme participants	98	102	539	536	-	-	-	-	-	-	79	81
Transfers in	-	-	-	-	-	-	-	-	-	-	-	-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s	-	-	-	-	-	-	-	-	-	-	(3)	-
	7,770	7,859	11,271	9,966	30	32	1,407	1,416	3,511	3,068	7,501	7,324
Less												
Benefits paid ¹	3,384	3,593	687	627	30	32	1,407	1,416	272	257	734	376
Taxes, premiums and expenses paid	5	5	32	30	-	-	-	-	-	-	33	19
	3,389	3,598	719	657	30	32	1,407	1,416	272	257	767	395
Fair value of scheme assets at end of the year	4,381	4,261	10,552	9,309	-	-	-	-	3,239	2,811	6,734	6,929

¹ Benefits paid includes estimate of net benefits paid and productivity payments.

⑥ 재정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

(e) Reconciliation of the net surplus/deficit to recognised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balance sheet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Defined benefit obligation	(64,446)	(59,837)	(41,544)	(34,153)	(803)	(737)	(28,559)	(26,689)	(22,922)	(18,781)	(7,979)	(7,604)
Fair value of scheme assets	4,381	4,261	10,552	9,309	-	-	-	-	3,239	2,811	6,734	6,929
Adjustment for contributions tax	-	-	-	-	-	-	-	-	-	-	-	70
Actuarial losses not included in balance sheet under corridor approach as per AASB 119	-	-	-	-	-	-	-	-	-	-	315	265
Net superannuation asset/(liability)	(60,065)	(55,576)	(30,992)	(24,844)	(803)	(737)	(28,559)	(26,689)	(19,683)	(15,970)	(930)	(340)

⑦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총비용 및 직접 순자산에 반영된 금액과 누계액

(f) Total expense recognised in income statement, amounts recognised directly in equity and cumulative amount of actuarial gains and losses recognised in the balance sheet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2010 \$m	2009 \$m
Current service cost	301	280	1,210	833	13	12	172	154	1,216	740	278	264
Interest cost	3,306	3,574	1,892	1,676	41	43	1,460	1,471	1,115	954	484	478
Expected return on assets	(280)	(368)	(659)	(745)	-	-	-	-	(209)	(215)	(561)	(636)
Superannuation (expense)/income	3,327	3,486	2,443	1,764	54	55	1,632	1,625	2,122	1,479	201	106

Total amounts recognised in equity¹

Actuarial gains/(losses)	(4,038)	(4,828)	(4,030)	(8,133)	(41)	(46)	(1,645)	(3,563)	(1,974)	(3,791)	(146)	(1,470)
--------------------------	---------	---------	---------	---------	------	------	---------	---------	---------	---------	-------	---------

¹ Where applicable, the actuarial gains/(losses) reported above are net of income tax. In the consolidated operating statement, income tax is eliminated. The actuarial gains/(losses) represent the sum of the actuarial gains/(losses) from Table 37(c) and (d). The total amount recognised as an 'Other economic flow' in the consolidated operating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0 was a loss of \$12,164 million (2008-09: \$21,633 million gain).

⑧ 연금 보유자산 유형별 공정가액 구성비율

(g)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is represented by: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Australian equity	27.1%	25.4%	27.1%	25.4%	-	-	-	-	30.0%	19.0%	6.9%	6.2%
Market Neutral Hedge Funds	8.8%	7.6%	9.0%	7.6%	-	-	-	-	-	-	-	-
Long short equities	2.2%	3.4%	2.2%	3.4%	-	-	-	-	-	-	-	-
International equity	27.6%	23.9%	27.6%	23.9%	-	-	-	-	11.0%	11.0%	0.5%	0.4%
Fixed income	-	-	-	-	-	-	-	-	-	-	0.8%	0.6%
Property	14.3%	16.7%	14.3%	16.7%	-	-	-	-	4.0%	5.0%	25.9%	30.8%
Private equity	-	-	-	-	-	-	-	-	17.0%	18.0%	7.5%	6.6%
Hedge funds	-	-	-	-	-	-	-	-	4.0%	3.0%	-	-
Infrastructure	-	-	-	-	-	-	-	-	8.0%	10.0%	-	-
Debt instruments	-	-	-	-	-	-	-	-	-	-	-	-
International bonds	5.1%	11.4%	5.1%	11.4%	-	-	-	-	-	-	6.6%	6.2%
Other	3.0%	-	3.0%	-	-	-	-	-	-	-	34.5%	33.5%
Cash	5.2%	9.8%	4.8%	9.8%	-	-	-	-	26.0%	34.0%	17.4%	15.6%

⑨ 연금 보유자산의 실제 수익

(h) Actual return on scheme assets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m	\$m	\$m	\$m	\$m	\$m	\$m	\$m	\$m	\$m	\$m	\$m
Actual return on scheme assets	501	(681)	885	(1,528)	-	-	-	-	85	(397)	395	(1,152)

⑩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및 기대수익률의 결정 근거

(i) Principal actuarial assumptions at the balance sheet date

Scheme	CSS		PSS		PCSS		DFRDB		MSBS		Other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Discount rate (active members)	5.2%	5.6%	5.2%	5.6%	5.2%	5.6%	5.2%	5.6%	5.2%	5.6%	5.1%	5.5%
Discount rate (pensioners)	5.2%	5.6%	5.2%	5.6%	5.2%	5.6%	-	-	-	-	-	-
Expected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active members)	7.0%	7.0%	7.0%	7.0%	-	-	-	-	7.0%	7.0%	8.4%	5.8%
Expected salary increase rate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8%	4.9%
Expected pension increase rate ¹	2.5%	2.5%	2.5%	2.5%	4.0%	4.0%	2.5%	2.5%	2.5%	2.5%	3.7%	3.7%

¹ Not relevant for all schemes.

(See notes below for more information.)

CSS and PSS

Assump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rates of retirement, death (for active, preserved and pension members), mortality improvements, invalidity, resignation, retrenchment, retention and take up rates of pensions in the scheme. Assumptions have also been made for the ages of spouses and rates of member contributions. Unless stated otherwise, all assumptions are the same as those used for the Long Term Cost Report as at 30 June 2008. Certain estimates and approximations were required to determine the year end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time frame required.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at 30 June 2010 was estimated using the audited fair value of scheme assets at 30 June 2009 with cash flow items provided by the scheme manager, other than benefits paid. An estimate of the actual rate of investment return earned by the scheme during the year to 30 June 2010 was used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scheme assets.

In relation to the defined benefit obligation, member data as at 30 June 2009 was projected forward allowing for dec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ong Term Cost Report 2008. The data was then adjusted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benefit payments and those based on the assumed decrements. Salaries at 30 June 2010 were estimated using an assumption derived from the APS remuneration survey. Members' account balances were increased to be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exit rates prevailing at 30 June 2010.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assumption is determined by weighting the expected long-term return for each asset class by the target allocation of assets to each asset class and allowing for the correlations of the investment returns between asset classes. The returns used for each asset class are net of investment tax and investment fees.

PCSS

For PCSS, in relation to the defined benefit obligation, member data as at 30 June 2009 was projected forward to 30 June 2010 assuming no increase to the backbench salary. Pensioner data as at 1 July 2009 was projected forward to 30 June 2010 allowing for mortality in accordance with the 2008 actuarial investigation.

DFRDB and MSBS

The Australian Government Actuary (AGA) estimates the unfunded provisions and expected future cash flows as at 30 June each year. These estimates are reflected in the Schedule of administered items. The AGA completes a full review of the unfunded liabilities (Long Term Cost Report) every three years. This was last completed in 2008.

For the DFRDB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assumption is not relevant as the scheme is an unfunded arrangement with no assets.

For the MSBS the expected return on assets reflects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plan assets are in growth assets that would be expected to return a premium over fixed interest investments in the long term. In recent years, the real yield on Government bonds has been of the order of 2.5 per cent per annum to 3.5 per cent per annum. In this context, a 4.5 per cent per annum real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seems reasonable giving a nominal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of 7 per cent per annum.

Other

The actuarial assumptions associated with these defined superannuation plans, such as rates of retirement, death, an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ere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scheme's actuary.

⑪ 예상 사용자 기여금

(j) Employer contributions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expected contributions for 2010 by scheme:

Scheme	\$m
CSS	30
PSS	236
PCSS	36
DFRDB	1,532
MSBS	420
Other	199

Where applicable, the surplus or deficit between accrued benefits and the net market value of plan asset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AS 25 *Financial Reporting by Superannuation Plans* is disclosed in the annual financial reports for each scheme.

The accrued benefits for the CSS, PSS and MSBS comprised a funded component, which will be met from the relevant scheme's funds (that is, accumulated member contributions and, where applicable, productivity contributions, plus interest) and an unfunded component to be financ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t the time the superannuation benefits become payable.

The accrued benefits for the DFRDB, DFRB and PCSS have no assets to meet benefit payments. Instead, the plans are financ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t the time benefits become payable.

사례와 같이 호주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대부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5개 회계연도의 추세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3) 뉴질랜드 공시사례

뉴질랜드는 호주와 유사하게 IAS 19와 같은 내용인 NZ IAS 19에 따라 종업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인식하되, 연금 보유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뉴질랜드의 2010 회계연도 국가 연결재무제표 주석 26에서 제공한 종업원연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연금의 대부분이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GSF)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세한 정보는 GSF에 대하여만 제공하고 있다.

① 연금제도 개요 및 제도별 부채금액

Forecast			Actual	
Original Budget	Estimated Actuals		30 June 2010	30 June 2009
\$m	\$m		\$m	\$m
10,307	9,154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GSF)	9,936	8,988
-	4	Other funds	4	5
10,307	9,158	Total retirement plan liabilities	9,940	8,993
<i>By source</i>				
10,307	9,156	Core Crown	9,938	8,991
1	1	Crown entities	1	1
(1)	1	State-owned enterprises	1	1
-	-	Inter-segment eliminations	-	-
10,307	9,158	Total retirement plan liabilities	9,940	8,993

The Government operates a defined benefit superannuation plan for qualifying employees who are members of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GSF). The members' entitlements are defined in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ct 1956. Members make regular payments to GSF and in return, on retirement, receive a defined level of income. GSF is closed to employees who were not members at 1 July 1992.

The GSF obligation has been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Actuary as at 30 June 2010. A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based on balance-date membership data, is used for the valuation. This method requires the benefits payable from the GSF in respect of past service to be estimated and then discounted back to the valuation date.

② GSF의 총부채 및 자산 공정가치

Amounts recognis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respect of GSF are as follows:

	Actual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Net GSF Obligation		
Present value of defined benefit obligation	12,881	11,792
Fair value of plan assets	(2,945)	(2,804)
Present value of unfunded defined benefit obligation	9,936	8,988
Present value of defined benefit obligation		
Opening defined benefit obligation	11,792	11,831
Expected current service cost	122	133
Expected unwind of discount rate	447	821
Actuarial losses/(gains)	1,348	(111)
Benefits paid	(826)	(882)
Other	(2)	-
Closing defined benefit obligation	12,881	11,792
Fair value of plan assets		
Opening fair value of plan assets	2,804	3,574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168	223
Actuarial gains/(losses)	117	(806)
Funding of benefits paid by Government	611	618
Contributions from other entities	13	13
Contributions from members	60	64
Benefits paid	(826)	(882)
Other	(2)	-
Closing fair value of plan assets	2,945	2,804

③ GSF와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금액

Amounts recognis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n respect of GSF are as follows:

Forecast			Actual	
Original Budget \$m	Estimated Actuals \$m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Personnel Expenses		
		Expected current service cost	122	133
		Expected unwind of discount rate on GSF obligation	447	822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168)	(223)
		Contribution from funding employers	(73)	(77)
		Past service cost	-	-
370	368	Total included in personnel expenses	328	655
		Net (Gains)/Losses on Non-Financial Instruments		
12	408	Actuarial losses recognised in the year	1,231	695
382	776	Total GSF expense	1,559	1,350

The Government expects to make a contribution of \$649 million to GSF in the year ended 30 June 2011.

In addition to its obligations to past and present employees, because GSF is liable to income tax, the Crown will be required to make additional contributions equivalent to the tax on future investment income.

④ GSF의 보험수리적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

The principal assumptions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GSF actuarial valuations are as follows:

	Actual	
	30 June 2010 %	30 June 2009 %
Summary of assumptions		
<i>For following year</i>		
Discount rate	3.5%	3.8%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6.0%	6.3%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3.0%	3.0%
Expected rate of inflation	5.9%	2.3%
<i>Beyond next year</i>		
Discount rate from 2 to 16 years	4.5% to 6.2%	3.8% to 7.7%
Discount rate from 17 years onwards	6.0%	6.0%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6.0%	6.3%
Expected rate of salary increases	3.0%	3.0%
Expected rate of inflation from 2 to 15 years	2.4% to	2.0% to
	2.5%	2.3%
Expected rate of inflation from 16 years onwards	2.5%	2.0%

⑤ GSF의 주요 유형별 보유자산의 내역 및 기대수익률 근거

The major categories of GSF plan assets at 30 June are as follows:

	Actual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Equity instruments	1,551	1,208
Debt instruments	776	510
Property	168	161
Other	450	925
Fair value of plan assets	2,945	2,804

The expected rate of return on the plan assets of 6.00% (2009: 6.25%) has been calculated by taking the expected long term returns from each asset class, reduced by tax and investment expenses (using the current rates of tax and investment expenses).

The actual return on plan asse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0 was 10.42%, or \$285 million (2009: -16.76% or -\$583 million).

⑥ GSF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The present value of the GSF obligation is sensitive to underlying assumptions such as the discount rate, inflation rates and expected salary increases. These assumptions are closely linked. For example, a change to the discount rate may have implications on the inflation rate used.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present value of pension payments it is unlikely that an assumption will change in isolation.

If the discount rate was to change in isolation, this would impact the measurement of GSF obligation as per the table below:

	Change	Impact on obligation	
		Actual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Sensitivity of assumptions			
Discount rate	+ 1%	(1,243)	(1,085)
	- 1%	1,492	1,299

⑦ GSF의 과거 추세 분석

Historical Analysis

Actual gains and losses comprise experience adjustments (the effec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actuarial assumptions and what has actually occurred in the year) 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actuarial assumptions on valuation date. The history of the present value of the unfunded defined benefit obligation and experience adjustments is as follows: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Actual 30 June 2008 \$m	30 June 2007 \$m
Present value of defined benefit obligation	12,881	11,792	11,831	11,167
Fair value of plan assets	(2,945)	(2,804)	(3,574)	(4,007)
Present value of unfunded defined benefit obligation	9,936	8,988	8,257	7,160
Experience adjustment - increase/(decrease) in plan liabilities	286	79	164	129
Experience adjustment - increase/(decrease) in plan assets	117	(806)	(479)	136
Total experience adjustments	(169)	(885)	(643)	7
Changes in actuarial assumptions	(1,062)	190	(455)	1,126
Actuarial (losses)/gains recognised in the year	(1,231)	(695)	(1,098)	1,133

⑧ 지급예상 시기별 GSF의 할인전 급여부채 내역

Undiscounted defined benefit obligation

The reported GSF defined benefit obligation of \$12,881 million (2009: \$11,792 million) represents the net present value of estimated cash flows associated with this obligation. The following table represents the timing of future undiscounted cash flows for entitlements to 30 June 2010. These estimated cash flows include the effects of assumed future inflation.

	30 June 2010 \$m	30 June 2009 \$m
No later than 1 year	841	844
Later than 1 year and no later than 2 years	878	855
Later than 2 years and no later than 5 years	2,646	2,622
Later than 5 years and no later than 10 years	4,464	4,352
Later than 10 years and no later than 15 years	4,392	4,253
Later than 15 years and no later than 20 years	4,066	3,908
Later than 20 years and no later than 25 years	3,510	3,366
Later than 25 years and no later than 30 years	2,742	2,644
Later than 30 years and no later than 35 years	1,935	1,880
Later than 35 years and no later than 40 years	1,230	1,210
Later than 40 years and no later than 45 years	699	697
Later than 45 years and no later than 50 years	349	353
Undiscounted defined benefit obligation	27,752	26,984

After 50 years there is expected to be a reducing level of cash for a further 20 years totalling approximately \$211 million (2009: \$243 million).

사례와 같이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대부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연금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 예상 기여금 내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IAS 19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할인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지급예상 시기별 할인전 급여부채 내역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시사점

(1) 연금 보유자산의 사외적립자산 여부

미국 연방정부는 독자적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종업원연금을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FRS를 따르고 있어 준거 기준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차이는 미국 연방정부는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FFAS 5 문단 68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금 총당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이를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연금 총당부채에서 차감한 순액을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사외적립자산 관련 공시사항을 주석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외적립자산은 IAS 19 문단 7에서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 보험계약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으로 설명하고 있다.

- (1)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 (2)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 (가)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 (나)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 모두 종업원연금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분류하였지만 각국의 종업원연금기금이 위의 요건 중 보고기업(실체)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보험수리적 손익의 처리

미국 연방정부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연금비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IAS 19의 선택적 대안 중 당기 일괄인식하고 이를 직접 자본에 가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모두 재정운영표에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세 나라 모두 당기 일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재정운영표 표시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3) 연금 총당부채 관련 공시 사항의 유사성

위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와 호주·뉴질랜드 간에 연금보유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부채에서 차감하는지의 여부 및 보험수리적 손익의 재정운영표 표시 여부에 대하여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공시 사항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 나라 모두 연금제도의 개요, 연금총당부채의 변동내용, 연금비용의 구성내용 등의 정보를 주석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연금총당부채 및 연금비용에 관한 필수적 공시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IAS 19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시사항

뉴질랜드는 IAS 19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및 지급예상시기별 할인전 부채금액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관련 공시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뉴질랜드만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수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Ⅲ. 사회연금 공시 해외사례

1. 미국

(1) 사회 연금 공시 관련 규정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연금은 SFFAS 17 “Accounting for Social Insurance”에 따라 회계 처리되며, 관련 공시사항도 이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SFFAS 17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대신 재정상태표 다음에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SSI)⁵⁾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주석으로 제공하며, 사회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필수보충정보인 RSI(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SSI는 ①수급권 있는 가입자, ②수급권 없는 가입자중, ③장래 가입자 유형별로 장래 예측 revenue와 expenditure의 현재가치를 각각 산출하여 과부족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즉, 장래 가입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총당부채 방식보다는 추계방식에 더 가까운 형태의 재무제표이다. SFFAS 17의 적용범위를 개정된 SFFAS 27 문단 14에서는 SFFAS 17의 적용범위인 사회보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or Social Security)
- Medicare Hospital Insurance (HI)
- Medicar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RRB)
- Black Lung benefits
-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general public (UI)

사회보험 중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RRB)는 정부근로자가 아닌 철도노동자의 연금,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유사점이 있다.

5) SFFAS 17에서는 required supplementary stewardship information (RSSI)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SFFAS 25에서 기본재무제표에 첨부되도록 개정하였다.

2010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된 SSI는 다음과 같으며, 설명한 바와 같이 장래 가입자(future participants)를 포함하여 추정된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차액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Note 26)
Present Value of Long-Range (75 Years, except Black Lung) Actuarial Projections**

(In billions of dollars)	2010	2009	2008	2007	2006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Social Security):¹⁴					
<i>Revenue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2 and over)	872	575	542	477	533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19,914	18,559	18,249	17,515	16,568
Future participants	19,532	18,082	17,566	16,121	15,006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40,118	37,217	36,357	34,113	32,107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2 and over)	(8,096)	(7,465)	(6,958)	(6,329)	(5,866)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32,225)	(30,207)	(29,021)	(27,928)	(26,211)
Future participants	(7,744)	(7,223)	(6,933)	(6,619)	(6,480)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48,065)	(44,894)	(42,911)	(40,876)	(38,557)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i>	<i>(7,947)¹</i>	<i>(7,677)²</i>	<i>(6,555)³</i>	<i>(6,763)⁴</i>	<i>(6,449)⁵</i>
Federal Hospital Insurance (Medicare Part A):¹⁴					
<i>Revenue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248	209	202	178	192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7,216	6,348	6,320	5,975	5,685
Future participants	6,944	5,451	5,361	4,870	4,767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14,408	12,008	11,883	11,023	10,644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2,648)	(2,958)	(2,747)	(2,558)	(2,397)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12,032)	(18,147)	(17,365)	(15,639)	(15,633)
Future participants	(2,411)	(4,673)	(4,506)	(5,118)	(3,904)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17,091)	(25,778)	(24,619)	(23,315)	(21,934)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i>	<i>(2,683)¹</i>	<i>(13,770)²</i>	<i>(12,736)³</i>	<i>(12,292)⁴</i>	<i>(11,290)⁵</i>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edicare Part B):¹⁴					
<i>Revenue (Premium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538	498	461	433	409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3,460	4,224	3,859	3,184	3,167
Future participants	839	1,270	1,158	1,172	906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4,836	5,992	5,478	4,789	4,481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2,166)	(2,142)	(1,986)	(1,834)	(1,773)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12,587)	(16,342)	(14,949)	(12,130)	(12,433)
Future participants	(2,984)	(4,672)	(4,262)	(4,257)	(3,407)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17,737)	(23,156)	(21,197)	(18,221)	(17,613)
<i>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⁶</i>	<i>(12,901)¹</i>	<i>(17,165)²</i>	<i>(15,719)³</i>	<i>(13,432)⁴</i>	<i>(13,131)⁵</i>

Totals may not equal the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Note 26), continued
Present Value of Long-Range (75 Years, except Black Lung) Actuarial Projections**

(In billions of dollars)	2010	2009	2008	2007	2006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edicare Part D):¹⁴					
<i>Revenue (Premiums and State Transfer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165	140	123	167	173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1,626	1,442	1,380	1,627	1,700
Future participants	694	618	604	611	492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u>2,486</u>	<u>2,199</u>	<u>2,107</u>	<u>2,405</u>	<u>2,366</u>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65 and over)	(646)	(595)	(581)	(794)	(792)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6,355)	(6,144)	(6,527)	(7,273)	(7,338)
Future participants	(2,714)	(2,632)	(2,856)	(2,699)	(2,121)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u>(9,715)</u>	<u>(9,371)</u>	<u>(9,964)</u>	<u>(10,766)</u>	<u>(10,250)</u>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⁶	<u>(7,229)¹</u>	<u>(7,172)²</u>	<u>(7,857)³</u>	<u>(8,361)⁴</u>	<u>(7,884)⁵</u>
Railroad Retirement:					
<i>Revenue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from:</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5	5	5	5	5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47	48	43	41	40
Future participants	66	70	54	54	56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u>118</u>	<u>123</u>	<u>102</u>	<u>100</u>	<u>100</u>
<i>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for:</i>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105)	(102)	(97)	(93)	(92)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88)	(91)	(88)	(86)	(84)
Future participants	(27)	(30)	(26)	(26)	(25)
All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u>(220)</u>	<u>(223)</u>	<u>(212)</u>	<u>(205)</u>	<u>(201)</u>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⁷	<u>(103)¹</u>	<u>(100)²</u>	<u>(109)³</u>	<u>(105)⁴</u>	<u>(101)⁵</u>
Black Lung (Part C):					
Present value of future revenue in excess of future expenditures ⁸	<u>6⁹</u>	<u>6¹⁰</u>	<u>5¹¹</u>	<u>5¹²</u>	<u>4¹³</u>
Total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u>(30,857)</u>	<u>(45,878)</u>	<u>(42,970)</u>	<u>(40,948)</u>	<u>(38,851)</u>

Totals may not equal the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Note 26), continued
Present Value of Long-Range (75 Years, except Black Lung) Actuarial Projections**

(In billions of dollars)	2010	2009	2008	2007	2006
Social Insurance Summary: ¹⁴					
<i>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i>					
Revenue (e.g.,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1,628	1,427	1,333	1,260	1,312
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13,661)	(13,262)	(12,369)	(11,608)	(10,920)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12,033)	(11,835)	(11,036)	(10,348)	(9,608)
<i>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i>					
Revenue (e.g.,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32,263	30,621	29,851	28,342	27,160
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63,287)	(70,931)	(67,950)	(63,056)	(61,696)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31,024)	(40,310)	(38,099)	(34,714)	(34,536)
Closed-group – Total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43,057)	(52,145)	(49,135)	(45,062)	(44,145)
<i>Future participants:</i>					
Revenue (e.g.,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28,075	25,491	24,743	22,828	21,227
Expenditures for scheduled future benefits	(15,875)	(19,224)	(18,578)	(18,714)	(15,933)
Present value of future revenue in excess of future expenditures	12,200	6,267	6,165	4,114	5,294
Open-group – Total present value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30,857)	(45,878)	(42,970)	(40,948)	(38,851)

¹ The projection period is 1/1/2010 -12/31/2084 and the valuation date is 1/1/2010.
² The projection period is 1/1/2009 -12/31/2083 and the valuation date is 1/1/2009.
³ The projection period is 1/1/2008 -12/31/2082 and the valuation date is 1/1/2008.
⁴ The projection period is 1/1/2007 -12/31/2081 and the valuation date is 1/1/2007.
⁵ The projection period is 1/1/2006 -12/31/2080 and the valuation date is 1/1/2006.
⁶ These amounts represent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transfers from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to th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 These future intragovernmental transfers are included as income in both HHS' and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Financial Reports but are not income from the Governmentwide perspective of this report.
⁷ These amounts approximate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financial interchange and the future transfers from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to the Social Security Equivalent Benefit Account (see discussion of Railroad Retirement Program in the 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section of this report). They are included as income in the Railroad Retirement Financial Report but are not income from the Governmentwide perspective of this report.
⁸ Does not include interest expense accruing on the outstanding debt.
⁹ The projection period is 9/30/2010 -9/30/2040 and the valuation date is 9/30/2010.
¹⁰ The projection period is 9/30/2009 -9/30/2040 and the valuation date is 9/30/2009.
¹¹ The projection period is 9/30/2008 -9/30/2040 and the valuation date is 9/30/2008.
¹² The projection period is 9/30/2007 -9/30/2040 and the valuation date is 9/30/2007.
¹³ The projection period is 9/30/2006 -9/30/2040 and the valuation date is 9/30/2006.
¹⁴ Participants for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re assumed to be the "closed-group" of individuals who are at least age 15 at the start of the projection period, and are participating as either taxpayers, beneficiaries, or both, except for the 2007 Medicare programs for which current participants are assumed to be at least 18 instead of 15 years of age.

Totals may not equal the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2010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26에서는 SSI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SSI를 작성·보고하지 않는다면 공시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적으므로 주석 26에 기재된 내용은 별첨 자료로 제시하였다.

SFFAS 17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지만, 미래 가입자를 포함한 수급자와 관련된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주석 및 RSI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부채로 인식한 것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SFFAS 17 제정 과정에서 극단적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결과이다. SFFAS 17 부록 A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극도로 양극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들 이슈에 대한 감정의 강도를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양극화된 견해에 직면하여 왔다. 한편에서는 현재의 가입자에게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급부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기적인 부담(즉, 회계기간 말에 기간이 도래하고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넘어서)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금액은 RSSI로서 보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80. 위원회는 위원회가 한편이 다른 편의 시점을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보험 프로그램 -특히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이 통합재무제표에서 인식되어야 할 연방 부채를 구성한다는 그리고 폐쇄그룹이 이러한 부채의 최선의 측정치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한쪽에 있다. 이들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모든 목적에 대한 현금유출의 추정치가 또한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지속가능성과 재무상태에 대한 모든 측정치가 의미 있게 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반대편 측에는 폐쇄그룹 측정치가 의미가 없거나 잠재적으로 오도될 수 있고 재무보고서에 전혀 공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있다.
81. 위원회는 양자의 접근방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함께 사용될 때 데이터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earned right)” 측정치는 프로그램의 재원충당 방법을 모르는 정보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금액을 발생시킨다. 양측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측이 옳고 다른 측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제공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방법은 폐쇄그룹 데이터가 Social Security 및 기타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균형 잡힌 RSSI의 공시 패키지의 일부로서 대차대조표 외에서 보고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SFFAS 17은 사회보험이 부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SFFAS 17은 일정부분 사회보험이 잠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호주, 뉴질랜드

(1) 회계기준의 특징

호주와 뉴질랜드의 중앙정부 모두 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회연금 관련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거나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으며,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사회연금을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미이행 계약 또는 정책공약과 같은 성격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각국에서 채택한 IFRS에 별도 문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2) 호주

호주 중앙정부의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1에서는 Personal Benefit에 대하여 정부가 금전적 이전을 직접 제공하였을 때 인식하며, 기간제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연금의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Personal benefits

1.106 Personal benefits are recorded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monetary transfers directly to households. Personal benefit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eriod-based and pay-day based.

1.107 Period-based personal benefits are paid in arrears following an entitlement period. Period-based personal benefits owing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are included as liabilities. A liability is recognised for pay-day based personal benefits as they are also paid fortnightly in arrears.

1.108 Indirect benefits are recorded where the government provides goods and services directly to households as social transfers in kind which includes medical and pharmaceutical benefits. Under AASB 1049, indirect benefits are classified as payments for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within gross operating expenses.

호주는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인 AASB 137에 호주 고유의 문단을 추가하여 정부 부문의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AASB 137 문단 Aus26.1에서는 예산정책, 선거공약 등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는 현재시점에 구속력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부채는 회계실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어야만 인식하는 것인데, 정부는 미래 보고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킬 의무를 현재 시점에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현재의무는 그 지급기간 동안 수혜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보조금 수혜자가 보조금 수혜조건 등을 충족하거나 보조금 협약에서 요구한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정부는 장기간의 공공정책 협약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킬 현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현재 또는 과거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Aus26.2에서는 반대로 회계실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회피할 재량권이 거의 없다면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재해 발생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무적 지원의 규모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에만 부채를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 AASB 137은 미래에 지출할,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현재시점의 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 계상을 하지 않음은 물론 우발부채로 주석공시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2010 회계연도 주석 1에서는 뉴질랜드 연금을 포함한 복지지출은 수혜신청기간이 도래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식하도록 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elfare benefits and entitlements

Welfare benefits and entitlements, including New Zealand Superannuation, are recognised in the period when an application for a benefit has been received and the eligibility criteria met.

뉴질랜드도 호주와 비슷하게, 뉴질랜드채택 국제회계기준인 NZ IAS 37에 고유 문단을 추가하여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NZ IAS 37 문단 NZ 1.1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NZ IAS 37은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법령에 기술된 의무의 회계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정도로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한 계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1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법령에 기술된 중앙정부의 의무란 중앙정부가 미래기간에,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조달할 재원을 사용하여 그 미래기간에 지역사회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수혜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전받을 수혜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2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지역사회가 세법 등에 따라 미래에 중앙정부에 총량적 의미의 재원을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가로 미래에 지역사회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미래 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하는 의무(실업급여, 가족수당 및 노령연금 등) 및 미래에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포함하며, 사회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근본적 재원은 미래의 과세에서 충당될 것이고, 수혜자가 그 혜택의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3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앙정부의 의무에 대하여 NZ IAS 37 적용을 제외한 것은 장래에 제공될 혜택의 수혜자가 이미 자격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이 기준 도입 시점의 관행과 다른 결과를 얻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중앙정부의 재무보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후속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NZ IAS 3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미이행계약이므로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물론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그 완료 전까지 우발부채에 관한 기준서인 NZ IAS 37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3. IPSAS

(1) IPSAS 공개초안 34

IPSASB는 2008년 사회수혜금⁶⁾에 관한 기준서인 IPSAS ED34 “Social Benefits: Disclosure of Cash Transfers to Individuals or Households”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다. 공개초안 34는 제목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사회수혜금을 적극적으로 부채로 계상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주식공시사항에 대하여만 다루는 기준서이다.

공개초안 3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수혜금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서이며, 사회수혜금 관련 부채·비용의 인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② 사회적 위협 해소를 위해 비교환거래로 제공되는 사회수혜금을 현금이전(Cash transfer), 집합재·서비스(Collective goods and services) 및 개별재·서비스(Individual goods and services)로 구분한다.
- ③ 공개초안 34는 비교환거래인 현금이전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종업원 종업원 근로 제공 대가 등 교환거래인 현금이전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④ 수급자가 이전받은 자원 사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현금이전과 개별재·서비스를 구분하며, 재량권 있으면 현금이전, 재량권 없으면 개별재·서비스이다.
- ⑤ 공시요구사항
 -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에 대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수

6) Social Benefits의 개념을 번역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재정통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번역용어를 차용하였다.

- 할인을 산정 등 측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
- 직전 보고일 후 가정 변화에 따른 효과(할인율 변동과 기타로 구분)
- 보험계리인 사용 여부 및 고용인 또는 외부인인지의 여부
- 사회수혜금 관련 비용·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정책, 인식된 금액

⑥ 예상이전금액의 측정 등

- 예상이전금액은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의 미래 추정 수급중단시점까지 지속적 수급 기준으로 측정한 사회수혜금 예상 지급액이다.
- 지속적 수급 기준이란 추정 수급중단시점까지는 계속 사회수혜금을 수급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년 뒤에 중단될 것이라 추정하였다면 보고일 후 2년간은 계속 지급할 것으로 보고 예상이전금액을 추정하며, 미래 수급권 중단후 재수급받는 것은 추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 IPSAS 공개초안 34에 따른 주식공시 사례

IPSAS 공개초안 45에서는 사회수혜금과 관련된 공공부문실체의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a) 프로그램 주관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한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
- (b) 문단 30,44에 따라 결정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 (c) 보고일 현재 각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수급권자 및 수급권가구의 수
- (d) 보고일 현재 사용된 주요 가정, 보고일 현재 수급권 있는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시 적용한 할인율 및 국제수익률이 아닌 할인율 적용시 할인율의 근거 등을 포함
- (e) 미래에 수혜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준
- (f) 직전 보고일 이후 주요 가정의 변화와 그 재무적 영향(할인율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다른 주요 가정의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별)
- (g) 주요 가정의 결정에 적격성 있는 보험계리인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사용되었다면 보험계리인이 보고실체의 고용인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의 여부
- (h) 보고일 이후 중단된 제도
- (i) 회계실체의 현금이전 관련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정책과 보고기간의 현금이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별로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비용 금액 및 재정상태표에 인식된 부채 금액

한편, IPSAS 공개초안 34 부록에서는 실업수혜금과 사회보장연금의 주석 공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 중 실업수혜금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업수혜금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 및 수급요건

실업수혜금은 주관 법률인 고용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주요 수급요건은 18세 이상이면서 은퇴연령에 미달하고, 7일 동안 유급고용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직 가능 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

1. Unemployment benefit is administer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Act 1976, as amended by the Employment Acts of 1992 and 2003. Regulations laid under these Acts provide a number of detailed requirements. The main eligibility criteria are that individuals are:

- Aged over 18, but under retirement age for a basic/welfare social security pension (currently 65 years);
- Have not been in paid employment for a period of seven days;
- Available for work; and
- Actively seeking work — benefit may be terminated if an individual rejects more than three offers of work.

② 공시사항에 적용된 방법 등에 대한 설명

공시사항은 보고일 현재 수급자격을 충족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가구에 대해 지급할 예상이전금액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수혜금 추정액은 총액이며, 다른 계층의 정부로부터의 과세, 처분 및 이전과 같은 유입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세나 기타 공제액 미지급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This disclosure provides an estimate of the amounts expected to be transferred to eligible individuals or households that have satisfied threshold eligibility criteria at the reporting date. The estimate is a gross figure and is not offset by inflows such as taxation, appropriations and transfers from other levels of government. It does not take account of possible income tax or other deductions payable by eligible individuals.

<i>Present Value of Amounts Expected to be Transferred to All Eligible Individuals or Households at Reporting Date</i>	December 31, 20X2	December 31, 20X1
	(millions of currency units)	(millions of currency units)

850

855

③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 수

3. The number of eligible individuals at the reporting date was:

December 31, 20X2	December 31, 20X1
(000s)	(000s)
1,015	1,123

④ 수급자와 관련된 주요 가정

이 가정은 지속적 수급 기준과 관련된 가정으로, 보고일 현재 수급자중 미래에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규모에 대한 가정하여 예상이전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에서는 당기말 현재 수급자의 40%는 1년 내에, 35%는 3년 내에, 10%는 5년 내에 수급이 중단될 것이며, 나머지 15%는 5년 후에도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4. In making the projections, key assumptions in relation to those who receive benefits are that (where these assumptions have changed figures in brackets present the position at December 31, 20X1):

- 40% of those in receipt of benefit as at December 31, 20x2 will return to work or otherwise cease to be eligible for benefit within one year of the reporting date (42% as at December 31, 20 X1);
- A further 35% will return to work or otherwise cease to be eligible for benefit within three years of the reporting date (31% as at December 31, 20X1);
- A further 10% will return to work or otherwise cease to be eligible for benefit within five years of the reporting date (12% as at December 31, 20X1);
- The remaining 15% of individuals currently eligible will still be claiming benefit after 5 years from the reporting date.

⑤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

사례에서는 실업수혜금이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수치는 2%이다.

5. It is assumed that benefits payable under the program will increase in line with Central Bank targets for inflation. Currently this target is 2% a year.

⑥ 할인율에 대한 가정

사례에서는 보고일 직후 수년간의 현금유출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그 이후 연도이후 발생할 것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위험 조정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6. The time value of money recognizes that cash outflows in year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porting date are more onerous than those arising in later years. For this reason, projections are discounted to their present value using a discount rate that is not adjusted for risk. The rates used in this reporting period and the previous reporting period were:

December 31, 20X2	December 31, 20X1
2.4%	2.1%

⑦ 가정 변화에 따른 효과

사례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감소액이 101백만이며, 다른 가정 변동에 따른 비용증가액이 58백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The financial effect of the changes in assumptions is (millions of currency units):
Decrease in expense due to change in discount rate: 101
Increase in expense due to changes in other assumptions: 58

⑧ 외부계리인 사용 등에 관한 공시

사례에서는 추정에 외부계리인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An external actuary was consulted on the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these projections.

⑨ 부채 및 비용 인식 기준과 금액

사례에서는 지급기일 도래기준에 따라 실업수혜금 관련 부채 및 비용을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Currently liabilities and expenses related to unemployment benefit are recognized on a due and payable basis. This means that the next payment following the satisfaction of the eligibility criteria, listed in paragraph 1 above, is expensed when eligibility criteria are satisfied. Any payments that have not been made at the reporting date are recognized as liabilitie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During the financial year ended December 31, 20X2 an expense of 39.2 million currency units was incurred (38.9 million currency units for the financial year ended December 31 20X1). At the reporting date, a liability of 1.4 million currency units was recognized (1.37 million currency units as at December 31 20X1).

(3) IPSAS 공개초안 34의 한계점

IPSAS 공개초안 34는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결론도출근거 등을 통하여 IPSASB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① 사회수혜금 관련 부채 등 인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IPSASB는 국가별로 사회수혜금 종류가 다양하여 일관된 기준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개초안 34를 첫 단계로 진행한 것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② 최소한의 금액만을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고일 현재 수급자에 대한 예상지급액만을 주석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IPSASB는 IPSAS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장기추계에 관한 공시 요구가 없다.

IPSASB는 적절한 장기추계 시스템이 없을 가능성 감안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보충적으로 장기추계에 관한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4) IPSAS 공개초안 34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IPSAS 공개초안 34에 대하여 30개의 의견이 회신되었으며, 이중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거나, 동의여부가 불분명한 6개를 제외한 24개의 유효응답을 토대로 공개초안에 대한 전반적 동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개의 응답은 IPSAS 공개초안 34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14개의 응답은 지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부문의 유효응답 14개 중 공개초안 34를 지지하는 응답은 3개에 불과하며, 3개 중 2개는 영국 정부부문의 응답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의 유효응답 10개 중 공개초안 34를 지지하는 응답은 7개로 나타났다. 즉 정부부문은 대체로 IPSAS 공개초안 34를 지지하지 않지만, 민간부문은 대체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IPSAS 공개초안 34를 지지하지 않는 정부부문도 IPSASB의 장기재정지속성 프로젝트는 모두 지지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공개초안 34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분적 정보의 공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장기재정지속성 정보가

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재무부(Treasury)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재무부는 공개초안 34가 적합한 첫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안의 내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IPSASB는 공개초안 34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재무부는 IPSASB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consultation paper에서 제기된 사회수혜금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ED34에서 제안된 공시사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공시 요구 금액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인식될 부채를 대표하지 않는다.
- 사회수혜금 프로그램 관리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 사회수혜금 프로그램의 장래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형태가 사회수혜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다.

4. 시사점

(1) 후속연구의 필요성

SFFAS 17도 그 결론도출근거에 나타난 것처럼 격렬한 의견대립 결과의 산물이며, 뉴질랜드의 NZ IAS 37이나 IPSAS 공개초안 34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수혜금에 관하여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사회수혜금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일관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는 주식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IPSASB는 최소금액을 주식공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각국의 정부부문은 IPSASB의 최소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일관된 입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정부는 공통적으로 사회수혜금 관련 주식공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보이용자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금주의 보고를 용인하거나 국가회계실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주식공시를 생략하고 있어 같은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비교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 정부도 사회연금의 우발채무 주식공시에 관하여는 거부하는 관점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성격에 관한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Railroad Retirement는 정부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유사점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의 SFAS에서 이를 사회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종업원연금이 아닌 사회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 4대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1. 종업원연금

(1) 주식 공시사항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적 공시 사항은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용
-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 연금이 보유한 자산은 IAS 19에서 정의하는 사외적립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연금이 보유한 자산은 연금충당부채의 차감항목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주석 공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AS 19에 따른 과거 5년간 추세 정보는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추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 적용성을 고려하여 중기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정부에서 공시하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및 지급 예상시기별 할인전 부채 금액 정보는 유용할 수 있지만,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해외 사례에서는 종업원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연금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한다는 관점에서 주식 공시 사항과 차별성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연금사업의 개요
-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 연금사업 운용의 성과
-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구성

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IAS 19의 사외적립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정보는 중요성이 있으므로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에서 연금 보유자산 및 운용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연금

(1) 주식 공시사항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미국 연방정부는 사회보험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를 인식하지는 않지만 절충적 관점에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입장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은 정책공약 또는 미이행계약의 성격이므로 현재시점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채인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PSAS는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장래 수급권지속 기준 예상이전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입장이지만 IPSAS의 제안에 대하여 각국의 정부는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의 NZ IAS 37 또는 IPASA 공개초안 34에서는 사회보장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후속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사회연금의 부채인식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적 비교가능성 관점에서 사회연금을 우발부채로 주식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장기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사회연금에 관한 보충적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유일하며, 매우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SI는 추계방식에 기반한 보고서이므로 사회연금 관련 우발부채를 주식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연금의 장기 추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금이 보유한 자산의 구성 및 운용성과는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이므로 종업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연금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연금사업의 개요
-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 연금사업 운용의 성과
-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구성
-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

① SSI에 대한 설명

Note 26. Social Insurance

The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 presents the projected actuarial present value of the estimated future revenue and estimated future expenditures of the Social Security, Medicare, Railroad Retirement, and Black Lung social insurance program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SSA, HHS, RRB, and DOL, respectively. These estimates are based on the economic and demographic assumptions presented later in this note as set forth in the relevan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rustees' reports and in the agency financial report of HHS and in the relevant agency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s for SSA, RRB, and DOL. The projections are based on the continuation of program provisions contained in current law. The estimates in the consolidated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SOSI) are for persons who are participants or eventually will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s contributors (workers) or beneficiaries (retired workers, survivors, and disabled) during the 75-year projection period (Black Lung is projected only through September 30, 2040 because the projection period will terminate on September 30, 2040).

Contributions and earmarked taxes consist of: payroll taxes from employers,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rsons; revenue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of Old-Age and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OASDI) and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excise tax on coal (Black Lung); and premiums from, and State transfers on behalf of, participants in Medicare. Income for all programs is presented from a consolidated perspective. Future interest payments and other future intragovernmental transfers have been excluded upon consolidation. Expenditures include scheduled benefit paymen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Scheduled benefits are projected based on the benefit formulas under current law. However, curren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law provides for full benefit payments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sufficient balances in the trust funds.

Actuarial present values of estimated future revenue (excluding interest) and estimated future expenditures for the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Railroad Retirement social insurance programs are presented for three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1) current participants who have attained eligibility age, (2) current participants who have not attained eligibility age, and (3) future participants who are new entrants expected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future. Current participants in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form the "closed group" of taxpayers and/or beneficiaries who are at least age 15 at the start of the projection period. For the 2007 Medicare projections, current participants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ion period. Since the projection period for the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Railroad Retirement social insurance programs consists of 75 years, the period covers virtually all of the current participants' working and retirement years, a period that could be greater than 75 years in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instances. Future participants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include births during the projection period and individuals below age 15 (below age 18 for the Medicare programs for 2007) as of January 1 of the valuation year. Railroad Retirement's future participants are the projected new entrants as of January 1 of the valuation year.

The present values of future expenditures in excess of future revenue are the current amount of funds needed to cover projected shortfalls, excluding the starting trust fund balances, over the projection period. They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ctuarial present values of future scheduled contributions and dedicated tax income by and on behalf of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from the actuarial present value of the future scheduled benefit payments to them or on their behalf.

② Trust Fund의 내역

The trust fund balances as of the valuation date for the respective programs, including interest earned, are in the table shown below. Substantially all of the Social Security (OASDI) and Medicare Hospital Insurance (HI), and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trust fund balances consist of investments in special non-marketable U.S. Treasury securities that are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S. Government.

(In billions of dollars)	2010	2009	2008	2007	2006
Social Security.....	2,540	2,419	2,238	2,048	1,859
Medicare:					
HI.....	304	321	312	300	285
SMI Part B.....	76	59	53	38	23
SMI Part D.....	1	1	3	1	-
Railroad Retirement.....	25	22	33	32	30
Black Lung.....	(6)	(6)	(10)	(10)	(10)

¹ As of the valuation date of the respective programs.

③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에 대한 설명

Social Security

The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program, created in 1935, and the Disability Insurance (DI) program, created in 1956, collectively referred to as OASDI or “Social Security,” provides cash benefits for eligible U.S. citizens and residents. Eligibility and benefit amounts are determined under the laws applicable for the period. Current law provides that the amount of the monthly benefit payments for workers, or their eligible dependents or survivors, is based on the workers’ lifetime earnings histories.

The primary financing of the OASDI Trust Funds are taxes paid by workers, their employers, and individuals with self-employment income, based on work covered by the OASDI Program. Refer to the *Social Insurance* segment in the Supplemental Information sec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social security program financing.

That portion of each trust fund not required to pay benefits and administrative costs is invested, on a daily basis, in interest-bearing obligations of the U.S. Government. The Social Security Act authorizes the issuance by the Treasury of special nonmarketable, intragovernmental debt obligations for purchase exclusively by the trust funds. Although the special issues cannot be bought or sold in the open market, they are redeemable at any time at face value and thus bear no risk of fluctuation in principal value due to changes in market yield rates. Interest on the bonds is credited to the trust funds and becomes an asset to the funds and a liability to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These Treasury securities and related interest are eliminated in consolidation at the Governmentwide level.

Medicare

The Medicare Program, created in 1965, has two separate trust funds: the Hospital Insurance (HI, Medicare Part A) and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Medicare Parts B and D) Trust Funds. HI pays for inpatient acute hospital services and major alternatives to hospitals (skilled nursing services, for example) and SMI pays for hospital outpatient services, physician services, and assorted other services and products through the Part B account and pays for prescription drugs through the Part D account. Though the events that trigger benefit payments are similar, HI and SMI have different earmarked financing structures. Similar to OASDI, HI is financed primarily by payroll contributions. Other income to the HI fund includes a small amount of premium income from voluntary enrollees, a portion of the Federal income taxes that beneficiaries pa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nterest credited on Treasury securities held in the HI Trust Fund. These Treasury securities and related interest are eliminated in the consolidation at the Governmentwide level.

For SMI, transfers from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represent the largest source of income for both Parts B and D. Beneficiaries finance the remainder of Parts B and D costs via monthly premiums to these programs. With the introduction of Part D drug coverage, Medicaid is no longer the primary payer for beneficiaries dually eligible for Medicare and Medicaid. For those beneficiaries, States must pay a portion of their estimated foregone drug costs into the Part D account (referred to as State transfers). As with HI, interest received on Treasury securities held in the SMI Trust Fund is credited to the fund and these Treasury securities and related interest are eliminated in consolidation at the Governmentwide level. Refer to the *Social Insurance* segment in the Supplemental Information sec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Medicare program financing.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MMA), enacted on December 8, 2003, created the Part D account in the SMI Trust Fund to account for the prescription drug benefit that began in 2006. The MMA established within SMI two Part D accounts related to prescription drug benefits: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Account and the Transitional Assistance Account. 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Account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broad, voluntary prescription drug benefits that commenced in 2006. The Transitional Assistance Account was used to provide transitional assistance benefits, beginning in 2004 and extending through 2005, for certain low-income beneficiaries prior to the start of the new prescription drug benefit.

Affordable Care Act (ACA)

The Affordable Care Act improves the financial outlook for Medicare substantially; however, the effects of some of the new law's provisions on Medicare are not known at this time, with the result that the projections are much more uncertain than normal, especially in the longer-range future. For example, the ACA initiative for aggres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the potential to reduce Medicare costs in the future; however, as specific reforms have not yet been designed, tested, or evaluated, their ability to reduce costs cannot be estimated at this time, and thus no specific savings have been reflected in the projections for the initiative.

Another important example involves lower payment rate updates to most categories of Medicare providers in 2011 and later. These updates will be adjusted downward by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experienced in the economy overall. Since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tends to be labor-intensive and is often customized to match an individual's specific needs, most categories of health providers have not been able to improve their productivity to the same extent as the economy at large. Over time,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mean that the prices paid for health services by Medicare will grow about 1.1 percent per year more slowly than the increase in prices that providers must pay to purchase the goods and services they use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Unless providers could reduce their cost per service correspondingly, through productivity improvements, or other steps, they would eventually become unwilling or unable to treat Medicare beneficiaries.

It is possible that providers can improve their productivity, reduce wasteful expenditures, and take other steps to keep their cost growth within the bounds imposed by the Medicare price limitations. Similarly, the implementation of payment and delivery system reforms, facilitated by the AC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could help constrain cost growth to a level consistent with the lower Medicare payments. These outcomes are far from certain, however. Many experts doubt the feasibility of such sustained improvements and anticipate that over time the Medicare price constraints would become unworkable and that Congress would likely override them, much as they have done to prevent the reductions in physician payment rates otherwise required by the sustainable growth rate formula in current law.

The reductions in provider payments reflected in these updates, if implemented for all future years as required under current law, could have secondary impacts, for beneficiary access to care; utilization, intensity and quality of services; and other factors. These possible impacts are speculative, and at present there is not consensus among experts as to their potential scope.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will help to better inform this issue and may enabl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projections of secondary effects under current law in the future.

The SOSI projections are based on current law. Therefore,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re assumed to occur in all future years, as required by the Affordable Care Act. In addition, reductions in Medicare payment rates for physician services, totaling 30 percent over the next 3 years, are assumed to be implemented as required under current law, despite the virtual certainty that Congress will continue to override these latter reduc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ctual future costs for Medicare are likely to exceed those shown by these current-law projections.

The extent to which actual future Part A and Part B costs exceed the projected current-law amounts due to changes to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nd physician payments depends on both the specific changes that might be legislated and on whether Congress would pass further provisions to help offset such costs. As noted, these examples only reflect hypothetical changes to provider payment rates.

It is likely that in the coming years Congress will consider, and pass, numerous other legislative proposals affecting Medicare. Many of these will likely be designed to reduce costs in an effort to make the program more affordable. In practice, it is not possible to anticipate what actions Congress might take, either in the near term or over longer periods.

The Medicare Board of Trustees, in their annual report to Congress, references an alternative scenario to illustrate the potential understatement of costs under current law. This alternative scenario assumes that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re gradually phased out over the 15 years starting in 2020 and that the physician fee reductions are overridden. These examples were developed by management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the calculations have not been audited; and the examples do not attempt to portray likely or recommended future outcomes. Thus, the illustrations are useful only as general indicators of the substantial impacts that could result from future legislation affecting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nd physician payments under Medicare and of the broad range of uncertainty associated with such impacts. The table below contains a comparison of the Medicare 75-year present values of income and expenditures under current law with those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illustration.

Medicare Present Values (in billions) (Unaudited)		
	2010 Consolidated SOSI	Illustrative Alternative Scenario ^{1,2}
Income		
Part A	\$14,408	\$14,408
Part B ³	4,836	7,684
Part D ⁴	2,486	2,486
Total Income	\$21,730	\$24,578
Expenditures		
Part A	\$17,091	\$21,745
Part B	17,737	28,284
Part D	9,715	9,715
Total Expenditures	\$44,543	\$59,744
Part A	\$2,683	\$7,337
Part B	12,901	20,600
Part D	7,229	7,229
Excess of Expenditures over Income	\$22,813	\$35,166
¹ These amounts are not presented in the 2010 Trustees' Report. ² At the request of the Trustees, the Office of the Actuary at CMS has prepared an illustrative set of Medicare Trust Fund projections that differ from current law. No endorsement of the illustrative alternative to current law by the Trustees, CMS, or the Office of the Actuary should be inferred. ³ Excludes \$12,901 billion and \$20,800 of General Revenue Contributions from the 2010 Consolidated SOSI projection and the Illustrative Alternative Scenario's projection, respectively; i.e., to reflect Part B income on a consolidated Governmentwide basis. ⁴ Excludes \$7,229 billion of General Revenue Contributions from both the 2010 Consolidated SOSI projection and the Illustrative Alternative Scenario's projection, respectively; i.e., to reflect Part D income on a consolidated Governmentwide basis.		

As expec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law projections and the illustrative alternative are substantial for Part A and Part B. All Part A fee-for-service providers are affected by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so the current law projections reflect an estimated 1.1 percent reduction in annual Part A cost growth each year. If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were gradually phased out, as illustrated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the present value of

Part A expenditures is estimated to be roughly 27 percent higher than the current-law projection. As indicated above, the present value of Part A income is unchanged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The Part B expenditure projections are significantly higher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than under current law, both because of the assumed gradual phase-out of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nd the assumption that the scheduled physician fee reductions would be overridden and based on annual increases in the Medicare Economic Index.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are assumed to affect more than half of Part B expenditures at the time their phase-out is assumed to begin. Similarly, physician fee schedule services are assumed to be roughly 30 percent higher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than under current law at that time.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wo factors results in a present value of Part B expenditures under the alternative scenario that is approximately 59 percent higher than the current-law projection.

The Part D projections are unaffected under the alternative projection because the services are not impacted by the productivity adjustments or the physician fee schedule reductions.

④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에 사용된 가정

Social Security and Medicare—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The Boards of Trustees¹ of the OASDI and Medicare Trust Funds provide in their annual reports to Congress short-range (10-year) and long-range (75-year) actuarial estimates of each trust fund. Because of the inherent uncertainty in estimates for 75 years into the future, the Boards use three alternative sets of economic and demographic assumptions to show a range of possibilities. Assumptions are made about many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ross domestic product (GDP), earnings, the CPI, the unemployment rate, the fertility rate, immigration, mortality, disability incidence and terminations and, for the Medicare projections, health care cost growth. The assumptions used for the most recent set of projections shown in Tables 1A (Social Security) and Table 1B (Medicare)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intermediate assumptions,” and reflect the trustees’ reasonable estimate² of expected future experience. For further information on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refer to SSA’s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and HHS’ Agency Financial Report.

Demographic Assumptions						
Year	Total Fertility Rate ¹	Age-Sex Adjusted Death Rate ² (per 100,000)	Net Immigration ³ (persons)	Period Life Expectancy at Birth ⁴		
				Male	Female	
2010	2.08	784.4	1,215,000	75.8	80.4	
2020	2.05	723.8	1,125,000	77.1	81.2	
2030	2.01	661.8	1,085,000	78.3	82.2	
2040	2.00	606.8	1,050,000	79.3	83.1	
2050	2.00	558.6	1,035,000	80.3	84.0	
2060	2.00	516.4	1,030,000	81.2	84.8	
2070	2.00	479.1	1,025,000	82.1	85.6	
2080	2.00	446.1	1,025,000	82.9	86.3	

Economic Assumptions						
Year	Real Wage Differential ⁵ (percent)	Average Annual Wage in Covered Employment ⁶ (percent change)	CPI ⁷ (percent change)	Real GDP ⁸ (percent change)	Total Employment ⁹ (percent change)	Average Annual Interest Rate ¹⁰ (percent)
2020	1.1	3.9	2.8	2.2	0.5	5.7
2030	1.2	4.0	2.8	2.1	0.5	5.7
2040	1.2	4.0	2.8	2.2	0.5	5.7
2050	1.2	4.0	2.8	2.1	0.5	5.7
2060	1.1	3.9	2.8	2.1	0.4	5.7
2070	1.1	3.9	2.8	2.1	0.4	5.7
2080	1.2	4.0	2.8	2.1	0.4	5.7

¹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any year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who would be born to a woman in her lifetime if she were to experience the birth rates by age observed in, or assumed for, the selected year, and if she were to survive the entire childbearing period. The ultimate total fertility rate of 2.0 is assumed to be reached in 2034.

² The age-sex-adjusted death rate is the crude rate that would occur in the enumerated total population as of April 1, 2000, if that population were to experience the death rates by age and sex assumed for the selected year. The death rate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³ Net immigration is the number of persons who enter during the year (both legally and otherwise) minus the number of persons who leave during the year.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⁴ The period life expectancy for a group of persons born in the selected year is the average that would be attained by such persons if the group were to experience in succeeding years the death rates by age assumed for the given year.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⁵ The real-wage differential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ntage increases, before rounding, in the average annual wage in covered employment, and the average annual CPI.

⁶ The average annual wage in covered employment is the total amount of wages and salaries for all employment covered by the OASDI program in a year divid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with any such earnings during the year.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⁷ The CPI is the annual average value for the calendar year of the CPI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⁸ The real GDP is the value of total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the U.S., expressed in 2005 dollars.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⁹ Total employment represents total of civilian and military employment in the U.S. economy.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¹⁰ The average annual interest rate is the average of the nominal interest rates, which, in practice, are compounded semiannually for special-issue Treasury obligations sold only to the trust funds in each of the 12 months of the year.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Table 1B
Medicare – 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Demographic Assumptions									
Year	Total Fertility Rate ¹	Age-Sex Adjusted Death Rate ² (per 100,000)	Net Immigration ³ (persons)						
2010	2.08	784.4	1,215,000						
2020	2.05	723.8	1,125,000						
2030	2.01	661.8	1,085,000						
2040	2.00	606.8	1,050,000						
2050	2.00	558.6	1,035,000						
2060	2.00	516.4	1,030,000						
2070	2.00	479.1	1,025,000						
2080	2.00	446.1	1,025,000						

Economic Assumptions									
Year	Real Wage Differential ⁴ (percent)	Average Annual Wage in Covered Employment (percent change)	CPI ⁵ (percent change)	Real GDP ⁶ (percent change)	Per Beneficiary Cost (percent change) ⁷			Real Interest Rate ⁸ (percent)	
					HI	SMI			
					Part B	Part D			
2010	3.1	5.1	2.0	2.3	1.1	3.8	4.3		0.9
2020	1.1	3.9	2.8	2.2	3.5	5.0	7.3		2.9
2030	1.2	4.0	2.8	2.1	4.7	4.8	5.9		2.9
2040	1.2	4.0	2.8	2.2	4.8	4.5	5.3		2.9
2050	1.2	4.0	2.8	2.1	3.9	4.1	5.1		2.9
2060	1.1	3.9	2.8	2.1	3.7	4.1	4.8		2.9
2070	1.1	3.9	2.8	2.1	3.6	3.9	4.6		2.9
2080	1.2	4.0	2.8	2.1	3.3	3.8	4.4		2.9

¹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any year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who would be born to a woman in her lifetime if she were to experience the birth rates by age observed in, or assumed for, the selected year, and if she were to survive the entire childbearing period. The ultimate total fertility rate of 2.0 is assumed to be reached in 2034.

² The age-sex-adjusted death rate is the crude rate that would occur in the enumerated total population as of April 1, 2000, if that population were to experience the death rates by age and sex assumed for the selected year. The death rate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³ Net immigration is the number of persons who enter during the year (both legally and otherwise) minus the number of persons who leave during the year.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⁴ The real-wage differential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ntage increases, before rounding, in the average annual wage in covered employment, and the average annual CPI.

⁵ The CPI is the annual average value for the calendar year of the CPI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⁶ The real GDP is the value of total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the U.S., expressed in 2005 dollars. It is a summary measure and not a basic assumption; it summarizes the effects of the basic assumptions from which it is derived.

⁷ These increases reflect the overall impact of more detailed assumptions that are made for each of the different types of service provided by the Medicare program (for example, hospital care, physician services, and pharmaceutical costs). These assumptions include changes in the payment rates, utilization, and intensity of each type of service.

⁸ The average annual interest rate earned on new trust fund securities, above and beyond the rate of inflation.

⑤ Railroad Retirement에 대한 설명

Railroad Retirement

The Railroad Retirement and Survivor Benefit program pays full retirement annuities at age 60 to railroad workers with 30 years of service. The program pays disability annuities based on total or occupational disability. It also pays annuities to spouses, divorced spouses, widow(er)s, remarried widow(er)s, surviving divorced spouses, children, and parents of deceased railroad workers. Medicare covers qualified railroad retirement beneficiaries in the same way as it does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The Railroad Retirement and Survivors' Improvement Act of 2001 (RRSIA) liberalized benefits for 30-year service employees and their spouses, eliminated a cap on monthly benefits for retirement and disability benefits, lowered minimum service requirements from 10 to 5 years, and provided for increased benefits for widow(er)s.

The RRB and the SSA share jurisdiction over the payment of retirement and survivor benefits. RRB has jurisdiction if the employee has at least 5 years (if performed after 1995) of railroad service. For survivor benefits, RRB requires that the employee's last regular employment before retirement or death be in the railroad industry. If a railroad employee or his or her survivors do not qualify for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the RRB transfers the employee's railroad retirement credits to SSA.

Payroll taxes paid by railroad employers and their employees are a primary source of income for the Railroad Retirement and Survivor Benefit Program. By law, railroad retirement taxes are coordinated with Social Security taxes. Employees and employers pay tier I taxes at the same rate as Social Security taxes. Tier II taxes finance railroad retirement benefit payments that are higher than Social Security levels.

Other sources of program income include: financial transactions with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rust Funds, earnings on investments, Federal income taxes on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and appropriations (provided after 1974 as part of a phase out of certain vested dual benefits). The financial interchange between RRB's Social Security Equivalent Benefit (SSEB) Account,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 the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and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 are intended to put the latter three trust funds in the same position they would have been had railroad employment been covered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From a Governmentwide perspective, these future financial interchanges and transactions are intragovernmental transfers and are eliminated in consolidation.

⑥ Railroad Retirement에 사용된 가정

Railroad Retirement–Employment, 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The most recent set of projections are prepared using employment, 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and reflect the Board Members' best estimate of expected future experience.

Three employment assumptions were used in preparing the projections and reflect optimistic, moderate and pessimistic future passenger rail and freight employment. The average railroad employment is assumed to be 217,000 in 2010 under the moderate employment assumption. This employment assumption, based on a model developed b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ssumes that (1) passenger service employment will remain at the level of 43,000 and (2) the employment base, excluding passenger service employment, will decline at a constant 2.0 percent annual rate for 23 years, at a falling rate over the next 25 years, and remain level thereafter. All the projections are based on an open-group (i.e., future entrants) population.

The moderate (middle) economic assumptions include a long-term cost of living increase of 3.0 percent, an interest rate of 7.5 percent, and a wage increase of 4.0 percent. The cost of living assumption reflects the expected level of price inflation. The interest rate assumption reflects the expected return on NRRIT investments. The wage increase reflects the expected increase in railroad employee earnings.

Sources of the demographic assumptions including mortality rates and total termination rates, remarriage rates for widows, retirement rates and withdrawal rates, are listed in Table 2. For further details on the employment, demographic, economic and all other assumptions, refer to the *U.S. Railroad Retirement Board Annual Report*, and the *24th Actuarial Valuation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under the Railroad Retirement Acts* (Valuation Report) as of December 31, 2007, with Technical Supplement.

Mortality Rates ¹	Mortality after age retirement	2007 RRB Annuitants Mortality Table
	Mortality after disability retirement	2007 RRB Disabled Mortality Table for Annuitants with Disability Freeze
		2007 RRB Disabled Mortality Table for Annuitants without Disability Freeze
	Mortality during active service	2003 RRB Active Service Mortality Table
	Mortality of widow annuitants	1995 RRB Mortality Table for Widows
Total Termination Rates ²	Termination for spouses	2007 RRB Spouse Total Termination Table
	Termination for disabled children	2004 RRB Total Termination Table for Disabled Children
Widow Remarriage Rate ³	1997 RRB Remarriage Table	
Retirement Rates ⁴	Age retirement	See the Valuation Report
	Disability retirement	See the Valuation Report
Withdrawal Rates ⁵	See the Valuation Report	
¹ These mortality tables are used to project the termination of eligible employee benefit payments within the population. ² Total termination rates are used to project the termination of dependent benefits to spouses and disabled children. ³ This rate is used to project the termination of spousal survivor benefits. ⁴ The retirement rates are used to determine the expected annuity to be paid based on age and years of service for both age and disability retirees. ⁵ The withdrawal rates are used to project all withdrawals from the railroad industry and resultant effect on the population and accumulated benefits to be paid.		

⑦ 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rogram에 대한 설명

Black Lung–Disability Benefit Program

The 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rogram provides for compensation and medical benefits for eligible coal miners who are totally disabled due to pneumoconiosis (black lung disease) as a result of their coal mine employment. The same program also provides for survivor benefits for eligible survivors of coal miners who died due to pneumoconiosis. DOL operates the 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rogram. BLDTF provides benefit payments to eligible coal miners totally disabled by pneumoconiosis and to eligible survivors when no responsible mine operator can be assigned the liability.

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ayments are funded by excise taxes from coal mine operators based on the sale of coal, as are the fund's administrative costs. These taxes are collect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nd transferred to the BLDTF,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Black Lung Benefits Revenue Act, and administered by the Treasury. Prior to October 3, 2008, the Black Lung Benefits Revenue Act provided for repayable advances to the BLDTF from the general fund of Treasury, in the event that BLDTF resources were not adequate to meet program obligations.

⑧ 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Program에 사용된 가정

Black Lung–Demographic and Economic Assumptions

The demographic assumptions used for the most recent set of projections ar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ir life expectancy. The beneficiary population data is updated from information supplied by the program. The beneficiary population is a nearly closed universe in which attrition by death exceeds new entrants by a ratio of more than ten to one. SSA Life Tables are used to project the life expectancies of the beneficiary population.

The economic assumptions used for the most recent set of projections are coal excise tax revenue estimates, Federal civilian pay raises, medical cost inflation, and the interest rate on new debt issued by the BLDTF. Projections are sensitive to changes in the tax rate and changes in interest rates on debt issued by the BLDTF.

Estimates of future receipts of the black lung excise tax are based on projections of future coal production and sale prices prepared by the Energy Information Agency of DOE. Treasury's Office of Tax Analysis provides the first 11 years of tax receipt estimates. The remaining years are estimated using a growth rate based on both historical tax receipts and Treasury's estimated tax receipts. The coal excise tax rate structure is \$1.10 per ton of underground-mined coal and \$0.55 per ton of surface-mined coal sold, with a cap of 4.4 percent of sales price. Based on Treasury's interpretation of the Act, the higher excise tax rates will continue until the earlier of December 31, 2018, or the first December 31 after 2008, in which there exist no (1) balance of repayable debt described in section 950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2) unpaid interest on the debt. Starting in 2019, the tax rates revert to \$0.50 per ton of underground-mined coal and \$0.25 per ton of surface-mine coal sold, and a limit of 2.0 percent of sales price.

OMB supplies assumptions for future monthly benefit rate increases based on increases in the Federal pay scale and future medical cost inflation based on increases in the CPIM, which are used to calculate future benefit costs. During the current projection period, future benefit rate increases 5.0 percent in 2011 and 4.0 percent in each year thereafter and medical cost increases 3.4 percent in 2011, and ranges from 3.5 percent to 3.8 percent thereafter. Estimates for administrative costs for the first 11 years of the projection are supplied by DOL's Budget Office, based on current year enacted amounts, while later years are based on the number of projected beneficiaries.

P.L. 110-343, Division B—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enacted on October 3, 2008, in section 113, (1) allowed for the temporary increase in coal excise tax rates to continue an additional 5 years beyond the current statutory limit and (2) restructured the BLDTF debt by refinancing the outstanding repayable advances (which had higher interest rates) with the proceeds from issuing discounted debt instruments similar in form to zero-coupon bonds (which had lower interest rates), plus a one-time appropriation. The Act also allowed that any debt issued by the BLDTF subsequent to the refinancing may be used to make benefit payments, other authorized expenditures, or to repay debt and interest from the initial refinancing. All debt issued by the BLDTF was effected as borrowing from the Treasury's Bureau of the Public Debt.